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915-10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I

2020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1. 추진배경 및 현황 7
2. 사업 운영체계 9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13

II

2020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1. 어린이집 이해하기 17
2.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자세 23
3. 부모모니터링 진행 방법 26
4.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시 유의사항 31
5.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부모모니터링 단위 행동요령 33

III

부모모니터링 지표

1.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구성 37
2. 부모모니터링 지표 세부기준 40
 - 영역 1. 건강관리 40
 - 영역 2. 안전관리 54
 - 영역 3. 급식관리 72
 - 영역 4. 위생관리 86

IV

2020 부모모니터링 서식

1.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103

V

부록 - 주요개정사항

1. 2020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
주요 변경사항 113
2. 2020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정사항 ... 115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CHAPTER

I

2020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1. 추진배경 및 현황
2. 사업 운영체계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I 2020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1. 추진배경 및 현황

- 부모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추진('13년~)
 - 보육서비스 개선대책('12.3) 일환으로 부모모니터링단 설치·운영 포함,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마련('13.6)
- 보육서비스 제공자(어린이집)와 수요자(부모) 간의 소통을 통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부모모니터링단)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추진 현황

〈2013~2019년 부모모니터링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16,019	27,169	27,948	26,237	24,226	18,389	15,036

〈2013~2019년 부모모니터링 참여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1,810 (100)	1,701 (100)	1,660 (100)	1,579 (100)	1,474 (100)	1,441 (100)	1,308 (100)
부모 단원	1,142 (63.1)	892 (52.4)	845 (50.9)	804 (50.9)	734 (49.8)	706 (49.0)	642 (49.1)
전문가 단원	616 (34.0)	669 (39.3)	731 (44.0)	708 (44.8)	686 (46.5)	684 (47.5)	618 (47.2)
컨설턴트	52 (2.9)	140 (8.2)	84 (5.1)	67 (4.2)	54 (3.7)	51 (3.5)	48 (3.7)

2. 사업 운영체계

□ 사업 운영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되 모니터링단원 교육 등 사업의 일부를 관할 시·도 단위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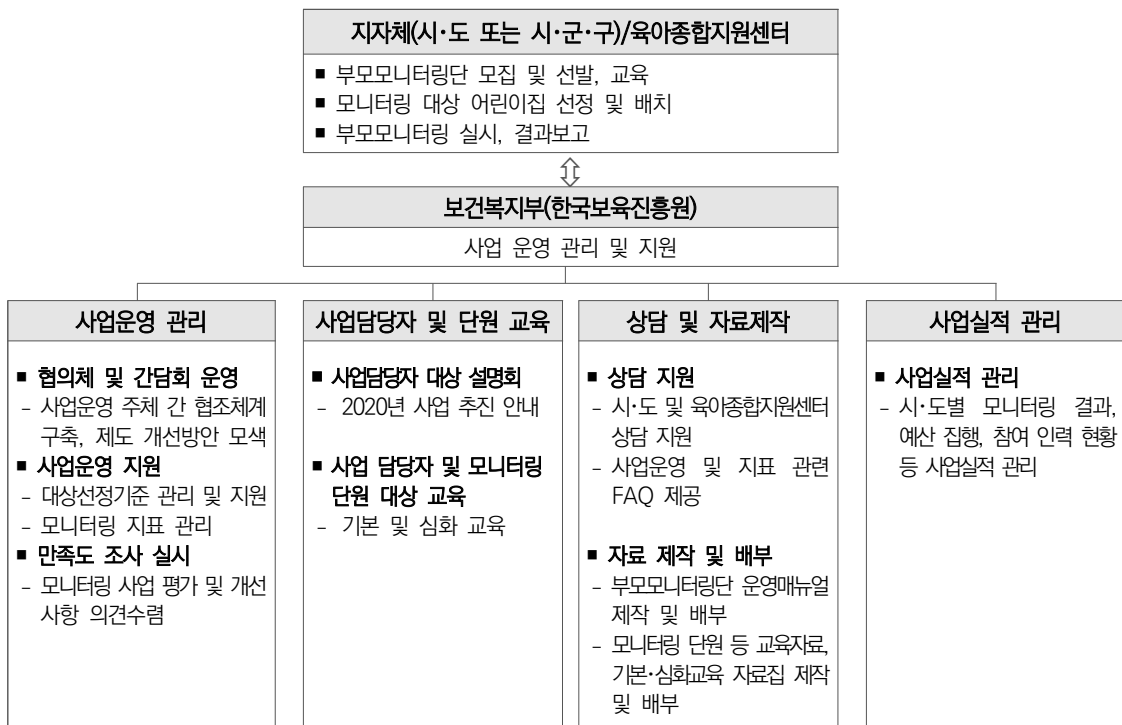
※ 시·군·구 단위로 운영할 경우, 해당 시·도의 운영계획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니터링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와 협력하여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부모모니터링 사업수행인력(겸직 가능)을 배치하고, 계약직 1명(6개월 내외)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리·지원 체계 마련
- 협의체 및 간담회 운영, 모니터링 지표 관리, 운영매뉴얼 제작, 사업담당자 및 단원 교육 및 상담, 사업실적 관리 등에 대해 연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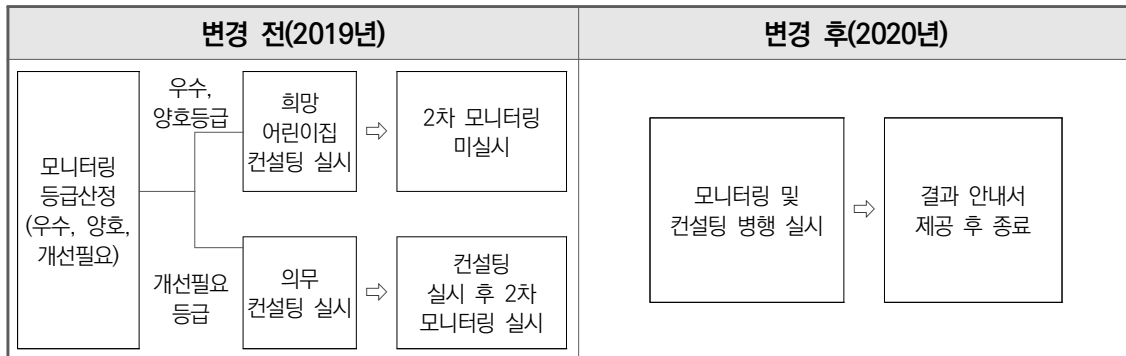
□ 모니터링 대상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선정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관내 어린이집 중 열린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 모니터링 대상 선정 기준

2019년	2020년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대상 ※ 우선 선정 기준 •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정지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 어린이집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대상 제외 기준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2018년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 평가인증 확인점검 대상 명단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가능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대상 ※ 우선 선정 기준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 대상 제외 기준 •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2020년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지표 주요 내용

- (모니터링과 컨설팅 병행)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 실시
 -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 및 어린이집의 컨설팅 필요사항을 반영한 실질적인 컨설팅 제공



- (기본 컨설팅 과제 운영) 모니터링 주요 지적사항 및 컨설팅 주요 사례 중심으로 기본 컨설팅 제공
 - 지표 관련 컨설팅을 위한 Tip, 관련 정보 제공(운영매뉴얼 지표 참고)
 - ※ 2020년 기본 컨설팅 과제 : 식자재 보관규정 등 급식관리
- (모니터링 지표 개선)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강, 안전, 급식, 위생 관련 핵심지표 중심으로 개선

〈 부모모니터링 지표 〉

2019년		2020년 개정		
영역	지표 수	영역	지표 수	(변동)
건강관리	4	건강관리	3	(△1)
안전관리	6	안전관리	4	(△2)
급식관리	5	급식관리	4	(△1)
위생관리	5	위생관리	4	(△1)
4개 영역	20개 지표	4개 영역	15개 지표	(△5)

- ▶ 4개 영역 20개 지표 → 4개 영역 15개 지표
- ▶ (지표 삭제) 2개 <1-2.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 및 응급처치 동의서, 2-2. 비상사태 대비한 안전 시설 및 설비, 대처방안>
- ▶ (항목 삭제) 2개 <1-1-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 수칙 구비, 2-5-①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이수>
- ▶ (유사·중복 지표 통합) 3개 <2-4.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방법 실천>, <3-4. 식자재 보관규정>, <4-3. 실내 공간 및 놀잇감 청결, 실내 공기 질 및 온도 관리>

□ 사업 운영절차

구분	내용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교육	•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및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어린이집 선정 및 모니터링단원 배치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원 어린이집 배치(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 구성) ※ 단,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어린이집의 경우 부모 1인이 모니터링 실시 가능
모니터링 실시 (컨설팅 병행)	•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 (방문일정 협의) 모니터링단원은 대표자나 원장 등과 일정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변경 금지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 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 (모니터링 시간) 1일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된 시작(9:30~10:00), 종료(12:30~13:00)시간까지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실시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진행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 • (모니터링 및 컨설팅)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하여 관련 정보 제공 ※ 부모 단원은 급식, 위생관리 영역, 전문가 단원은 건강, 안전관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실시 - 지표별 항목 미충족(N)사항은 보육·보건전문가(또는 부모)가 현장에서 모니터링 당일 컨설팅 실시 - 부모모니터링 거부·방해·기피 등의 경우,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연계 가능 • (모니터링 결과 안내) 모니터링 결과를 당일 서면으로 통보 - 모니터링 단원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지표 충족(Y/N)여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내용 등 기재 ※ 어린이집 의견은 지자체 제출 시 작성(어린이집 배부 불필요) - 모니터링 단원은 어린이집 원장 상호 서명하고 모니터링 종료 ※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재원 영유아 부모에게 공지하도록 안내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모니터링 결과 제출)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실시 후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서식참조)를 지자체에 3일 이내 제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 -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 -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교육 및 간담회	• 모니터링 사업시행 중 모니터링단원 대상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모니터링단은 시·군·구별 10명 이내(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 모니터링 단원은 공모 절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보, 보육포털사이트 등에 게재)에 의거하여 모집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지역특성상 공모 절차에 의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예외(예: 읍면 도서지역 등)
-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병행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모니터링 단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촉 할 수 있음
- 모니터링단 선정 기준
 - 부모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로 하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관할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하여 부모참여 확대와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이해를 제고함
 -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만 참여하는 부모는 부모모니터링단 참여 제한
 - 부모참여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부모의 활동기간을 연속하여 최대 2년으로 제한
※ '19 ~'20년 연속하여 부모 단원으로 활동한 경우 '21년 활동 불가, '22년 활동 가능

구분		선정요건
전문가	보육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포함)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 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담당자, 모니터링 단원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및 개선 내용, 지표 관련 내용, 모니터링 사례와 FAQ 등을 중심으로 기본(심화)교육을 실시함
- 시·도지사는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반드시 2회 이상(상반기: 현장 및 이론교육, 하반기: 보수교육) 다음 내용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또는 모니터링 단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취지 및 목적
 -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지표 관련 내용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 시·도지사는 직접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접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시·군·구청장은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간담회, 소그룹 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CHAPTER

II

2020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1. 어린이집 이해하기
2.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자세
3. 부모모니터링 진행 방법
4.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시 유의사항
5.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부모모니터링 단원 행동요령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II 2020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1. 어린이집 이해하기

□ 어린이집의 유형(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제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 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간

-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보육시간 : 기본보육(09:00~16:00, 7시간) + 연장보육(16:00~19:30)
 - 어린이집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

- 기본보육(09:00~16:00)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시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가 보육하는 것을 의미
 - * 기본보육시간 동안 영유아는 표준보육과정 및 유아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놀이와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성장함
 -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16:00~19:30) :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을 의미. 연장보육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
 - * 연장보육 프로그램은 기본보육 프로그램(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과 연계 선상에 있어야 하며, 교사주도의 활동보다는 영유아가 가정과 같이 쉬면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 연장보육시간에는 특별활동 신설이 불가함. 연장보육시간은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된 만큼 특별활동보다는 연장보육교사가 전담하여 안정적인 보육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함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 출처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이용) 안내(보건복지부, 2020), 2020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0)

● 일과운영

구분	영아반 일과운영계획 예시		유아반 일과운영계획 예시		
기본 보육	7:30~9:00	등원 및 통합보육	7:30~9:00	등원 및 통합보육	
	9:00~10:20	실내(외) 자유놀이	9:00~10:30	실내(외) 자유놀이/ 오전 간식	
	10:20~10:50	손 씻기 및 화장실가기(기저귀갈이) 오전 간식(또는 이유식)	10:30~10:40	정리정돈 및 화장실 가기	
	10:50~11:30	바깥놀이	10:40~11:10	대·소집단 활동(또는 자유놀이)	
	11:30~12:40	손 씻기 및 화장실가기(기저귀갈이) 점심 및 이 닦기	11:10~12:20	바깥놀이/ 손 씻기	
	12:40~14:30	낮잠 및 휴식	12:20~13:20	점심식사 및 이 닦기	
	14:30~15:00	손 씻기 및 화장실가기(기저귀갈이) 오후 간식(또는 이유식)	13:20~14:30	낮잠 및 휴식 (4~5세는 자유놀이 및 휴식)	
			14:30~15:00	손 씻기 및 오후 간식	
15:00~16:00	실내 자유놀이 기본보육 아동 하원	15:00~16:00	실내 자유놀이 기본보육 아동 하원		
연장 보육	16:00~16:30	연장반 이동(아동 수 확인) 개별 옷, 가방 등 정리	16:00~16:30	연장반 아동 (아동 수 확인) 개별 옷, 가방 등 정리	자유놀이 및 휴식
	16:30~17:00	인사나누기 손 씻기 및 화장실가기(기저귀갈이)	16:30~17:00	인사 나누기 손 씻기 및 화장실 가기	
	17:00~19:30	자유놀이 및 휴식(섶) 일상생활(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 연장보육 아동 하원	17:00~19:30	자유놀이 및 휴식(섶) 일상생활(손 씻기, 화장실 가기 등) 연장보육 아동 하원	
	19:30	정리	19:30	정리	

※ 제시된 일과운영계획은 예시이며,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출처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이용) 안내(보건복지부, 2020)

□ 표준보육과정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됨
- (추구하는 인간상)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 (구성의 중점)
 -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
 -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
 - 표준보육과정은 다음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
 -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
 -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
 -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
- (목적 및 목표)

목적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음
0~2세 보육과정 목표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3~5세 보육과정 목표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 0 ~ 2세 영역별 내용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건강하게 생활하기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듣기와 말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탐구과정 즐기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신체활동 즐기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더불어 생활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 2019 개정 누리과정 : 3 ~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신체활동 즐기기	듣기와 말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탐구과정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더불어 생활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사회에 관심가지기	예술 감상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 출처 :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2020.9.1.시행)

□ 어린이집 평가

- (평가제 시행) 2005년부터 자율신청에 의해 시행되어 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12일부터 전체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되어 시행 중임
- (목적)
 -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함
 -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함
 -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영유아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평가지표 구성) 4영역, 18지표, 59항목

영역	지표	항목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 영유아 권리 존중(필수)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1-3. 놀이 및 활동 지원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1-5. 보육과정 평가	18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2-3. 기관 운영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14
건강·안전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2. 급·간식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4. 등·하원의 안전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15
교직원	4-1. 원장의 리더십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12
4영역	18지표	59항목

* 출처 :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0)

2.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자세

□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 어린이집의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영역 모니터링
 -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 부모모니터링 지표 중심의 컨설팅 병행 실시
 -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필요사항 및 어린이집의 컨설팅 필요사항을 반영한 실질적인 컨설팅 제공

□ 부모모니터링단의 역량

-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이해
 -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함
 - ※ 개인적인 취향이나 요구 등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해석하지 않음
 - 모니터링 지표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 보육사업안내, 지도점검 및 평가 지표 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이해
 - 모니터링은 지도점검이나 평가와는 달리 어린이집의 우수한 점을 격려하고,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필요사항 및 어린이집의 컨설팅 필요사항을 반영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모니터링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함께 2인 1조로 구성되어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모와 전문가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함
 - ※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각각 해당 영역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후 함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보고서에 작성함
 - 어린이집 방문 전 대표자나 원장 등과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하고, 모니터링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며, 방문 후에는 반드시 관계자의 협조 하에 모니터링을 진행함
 - 어린이집 사정과 상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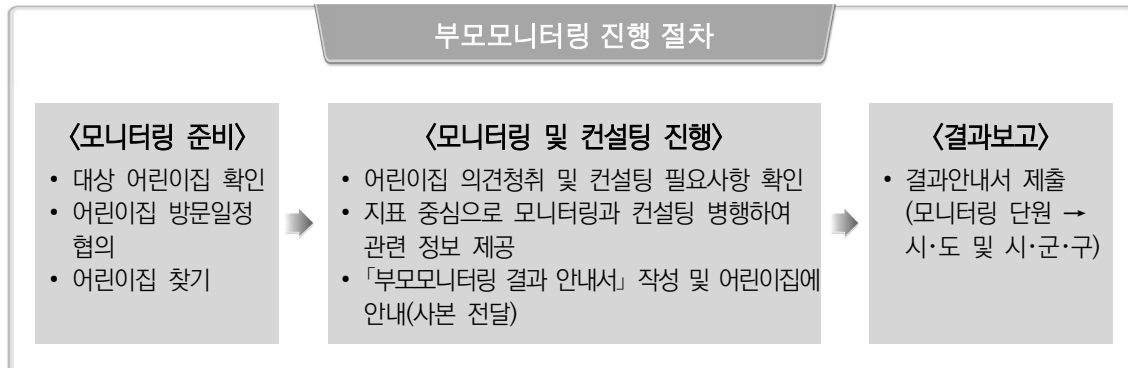
□ 부모모니터링단의 자세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 및 보육교직원 존중하기
 -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특성 등에 대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어린이집을 비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됨
 - 어린이집 방문 시에는 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보육교직원, 부모 및 영유아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눈이 마주칠 때는 미소를 띠고 인사나 목례 등을 함
-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 유지, 어린이집에 대한 공감과 격려하기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부모 및 영유아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린이집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유지함
 -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며, 개선필요사항 안내 시에는 일방적으로 내용을 알려주거나 지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안내함
 - 모니터링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격려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우수한 점에 대해 격려함
- 영유아를 존중하고 보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 모니터링 진행 시 영유아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함
 - *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놀잇감 모두 쏟아 놓기, 보육활동 중인 영유아에게 사적 이야기 걸기 등
 - 영유아를 만지거나 음식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됨(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신체접촉 금지)
 - 영유아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육교직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 즉시 보육교직원에게 이야기하여 영유아를 보호하도록 함
- 공손한 언어, 긍정적·칭유형 언어 사용하기
 - 보육교직원의 나이, 경력 등과 상관없이 모든 보육교직원과 부모 등에게 공손하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함(반말 사용 금지)
 - 부정적·지시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칭유형 언어(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를 사용함
-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위생에 주의하기
 - 어린이집 방문 시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함(양말이나 덧신 착용 등)
 - 어린이집 방문 시 반드시 손을 씻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특히 조리실이나 영유아 급·간식 관찰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위생에 주의하여야 함

-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지원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토대로 기준을 안내하고, 객관적 내용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예시 “조리직원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네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에는 조리직원은 음식 조리 시 반드시 위생모와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 조리할 때는 반드시 위생모를 준비하셔서 착용하세요.”
 -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친절히 안내함
 - 선입견이나 개인적 취향 등을 반영하여 지표를 해석해서는 안 되며, 한 가지 영역이 미흡하다고 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주의함

3. 부모모니터링 진행 방법



□ 모니터링 준비

- 대상어린이집 확인
 - 모니터링 단위(부모, 전문가)은 시·도 및 시·군·구청(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어린이집 명단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일정을 계획함
 - 부모모니터링은 하루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된 시작 시간(9:30~10:00), 종료(12:30~13:00)시간에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실시
 -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진행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어린이집 방문 일정 협의
 - 어린이집 방문 전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일정을 사전에 협의(방문 7일 전까지)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일정 변경 금지
 -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 어린이집 찾기
 - 방문 전 어린이집 위치를 확인한 후 방문함
 -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찾기
 - 어린이집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함
 - ※ 다만,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자가 이용

□ 모니터링 진행(컨설팅 병행)

-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를 제시함
 -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이 경우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 다만,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출입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함께 출입할 때에는 승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수 없음
- 모니터링 안내
 - 어린이집 현관 입구에서 도착을 알린 후 안내를 받아 입실함
 - 원장실 또는 사무실에서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모니터링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시작함

예시 “안녕하세요? 부모모니터링단 000입니다. 모니터링에 앞서 모니터링 영역과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4개 영역의 1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항목에 따라 문서 및 관찰, 보육교직원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표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면 도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 모니터링 실시(컨설팅 병행)
 - 어린이집 운영 또는 부모모니터링 관련 애로사항 등 의견청취 시간을 반드시 진행
 -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어린이집 배부, 지자체 제출)에 어린이집 의견 주요 내용을 기재함
 - 부모는 급식·위생관리 영역, 전문가는 건강·안전관리 영역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표의 확인 방법(관찰, 면담, 기록)을 준수하여 진행함
 - 컨설팅은 전문가 단원이 진행하며,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필요 사항 및 어린이집의 컨설팅 필요사항을 반영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함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지표별 확인 결과 ‘충족(Y)’, ‘미충족(N)’내용을 확인한 후 기재하고 개선필요 사항 및 이에 대한 컨설팅 내용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최종 작성하여 제출함
- 모니터링 결과 안내
 - 모니터링 결과(컨설팅 내용 포함)는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를 통해 당일 서면으로 통보하여 어린이집 자체 질 관리를 유도함
 -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부모에게 공지하도록 안내

- 모니터링 실시 중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피해가 우려되어 즉시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해당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반드시 당일 통보함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예시 〉

소요 시간 (총 3시간)	활동 내용
10:00~10:20 (20분)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인사 • 모니터링 지표 내용 및 확인방법 안내
10:20~10:40 (20분)	• 어린이집 의견 청취(어린이집 운영 전반, 부모모니터링 사업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 • 모니터링 진행방법 및 컨설팅 등 안내
10:40~12:40 (120분)	• 모니터링(관찰, 기록, 면담) 실시(컨설팅 병행) •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필요 사항 및 어린이집의 컨설팅 필요사항을 반영한 관련 정보 제공 • 지표별 평가항목 미충족(N)사항은 전문가(또는 부모)가 현장에서 컨설팅 실시
12:40~13:00 (20분)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단위 간 상호 논의 후 결과 안내서 작성 • 원장에게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내용 확인 후 서명 * 원장 부재 시 주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에게 안내 • 모니터링 결과(컨설팅 내용 포함)는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를 통해 당일 서면으로 통보 •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부모에게 공지하도록 안내

● 모니터링 종료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안내한 후, 반드시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앞면에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을 받음
 -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내용을 어린이집에 안내(서식 참조)
 - ※ 원장의 확인 서명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부재 시, 위임한 주임교사 등에게 서명을 받음
-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을 받은 후,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를 복사하여 사본은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원본은 전문가 단원이 관리함
 -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원본은 추후 시·군·구청에 제출함
- 모니터링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응답 후 마무리

예시 “모니터링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 사항 및 지표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린 사항은 꼭 확인하셔서 어린이집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모니터링 현장에서 작성한 결과 안내서에 총괄 의견과 특이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함
※ 부모 단원과 전문가 단원이 협의하되, 전문가 단원이 직접 작성
- 최종 작성한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원본은 추후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되, 사본은 3일 이내 제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센터로 제출
※ 어린이집 의견 등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제출(어린이집 통보 불필요)
- 아동학대, 법령 위반사항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해당사실을 즉시 통보함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작성 방법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어린이집 배부(부모 공지용), 지자체 제출)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어린이집 배부(부모 공지용), 지자체 제출)			
어린이집명			
방문일자	2020년 월 일	시작시간	:
		종료시간	:
방 문 자	(부모단원) (서명)	어린이집 확인자 ^①	(원장) (서명)
	(전문가단원) (서명)		

□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영역	지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 내용 ^②
건강 관리	1-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1-2.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 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1-3.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① 모니터링 결과 안내 및 컨설팅 후 앞면에 어린이집 원장의 확인 서명을 받음
②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필요 사항, 컨설팅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함('Y'평정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제공한 컨설팅 내용 기재)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어린이집 배부, 지자체 제출)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어린이집 배부, 지자체 제출) 작성방법

□ 어린이집 개요

어린이집명			방문일자	2020년	월	일
소재지						
설립유형	☐ 국공립 ☐ 민간	☐ 사회복지법인 ☐ 가정	☐ 법인·단체등 ☐ 직장	☐ 협동		

□ 모니터링 내용

어린이집 의견 ^①	
-------------------------	--

OO 시·군·구 OO과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②	확인결과 (V) ^③		컨설팅 주요 내용 ^④ (개선 필요사항, 지표 관련 정보 등)
		Y	N	
1-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① 보육교직원이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②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1-1-① : 관찰, 면담 ☐ 어린이집 운영 시 감염병 관리수칙 준수 여부 ☐ 감염병 관리수칙 숙지 여부 1-1-② : 면담 ☐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방법 부모 안내 여부 확인			

- ① 모니터링 진행 시, 어린이집 운영 또는 사업 관련 의견 등이 있는 경우 간략하게 기재
- ② 모니터링 지표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V)하고 관련 내용 기재
- ③ 확인 결과(V)란에 충족여부에 따라 'Y' 또는 'N'에 체크(V)
- ④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 사항 및 어린이집에 안내한 지표 관련 정보 등 컨설팅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4.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시 유의사항

□ 모니터링 장소별 유의사항

- 영유아 활동 공간(보육실 등)
 - 영유아를 만났을 때, 밝게 웃으며 인사한 후 모니터링을 진행함
 - 모니터링단의 이동 및 대화 등으로 영유아의 활동과 동선, 식사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육실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관찰함
 - 실내외 시설 및 놀잇감 등의 안전 및 위생상태 확인 시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확인(잘못된 예: 놀잇감을 모두 쏟아놓거나 교구장을 모두 비워놓기 등)
- 조리실 및 식당, 화장실
 - 조리직원에게 인사를 한 후 모니터링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확인 후에는 감사 인사를 함
 - 모니터링은 급·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므로 조리실 입실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복장과 머리를 단정히 함(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 식자재 확인 시에는 조리직원에게 먼저 요청하거나 양해를 구한 후 확인함

예시 “식자재 유통기한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볼 수 있을까요?, 후드 및 환풍기가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드 작동을 부탁드립니다.”
 - 입고일 및 유통기한 확인 등 식자재 점검 시, 특히 위생에 주의하여 식자재가 흐트러지거나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리직원, 보육교직원의 협조 받아 확인함
 - 화장실 점검 시에는 영유아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 관찰함

□ 일반적 유의사항

-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부모모니터링은 어린이집의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지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확인하거나 필요이상의 문서를 요구하거나 관찰 및 면담 등을 진행하지 않도록 함
 - 모니터링 지표 확인 방법은 ‘기록, 관찰, 면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별 확인 방법을 토대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진행함**
 - 개선필요 사항 안내 및 컨설팅 시에도 모니터링 지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업무 과중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함

- 부모모니터링 지표에서는 ‘구매영수증’등 어린이집 회계 관련 장부나 문서는 확인하지 않음

예시 식품구입일자 확인 시 ‘식자재’ 포장지나 용기 등에 붙어있는 식품구입날짜 표기를 통해 확인

- 어린이집 정보를 외부로 발설하지 않으며, 비밀 유지하기
 - 모니터링 과정에서 알게 된 어린이집 정보는 어디에서도 공개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하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함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시 어린이집 내 사진 촬영을 금하며, 어린이집 정보 등을 개인블로그나 카페, SNS 상에 공개하지 않음
 -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영유아 등의 개인정보가 모니터링단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이 책임지게 되며(정보 보안 서약), 모니터링 진행 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개인정보열람을 요구 하지 않음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 면담 외에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음(보험, 물건판매, 개인사업 홍보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
 - 영유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어린이집 운영 위법사례 발견 시 반드시 당일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5.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부모모니터링 단위 행동요령

□ 모니터링 전 준비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함
 - 모니터링 단원은(보육보건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방문 이전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시, 시·군·구 담당공무원(육아종합지원센터)에 즉시 보고하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모니터링 업무배제
- 마스크,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위생용품 준비함

□ 모니터링 과정 중 행동요령

-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발열검사 등 건강상태 확인 및 손소독 실시 후 입실하도록 함
- 어린이집 방문 전 모니터링 단원은 마스크 착용함
- 어린이집 방문 직후, 양해를 구한 후 손 씻기를 하며, 이후에도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함
- 보육교직원과 악수 등 신체 접촉은 피함
- 모니터링 진행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시·군·구 담당공무원(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고함
- 모니터링 과정 중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19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물품(예:물병, 휴대폰 등)을 사용하며 아래의 공간별 수칙을 준수함
- (보육실, 유희실 등)
 - 보육교직원과의 대화를 최소화 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1~2m 이상 거리가 확보되었을 때 면담으로 확인함
 - 보육실 등 공간을 이동할 경우 반드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후 관찰함
 - 화장실 관찰 시에는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이 미사용 시 관찰함
- (조리실)
 - 조리실 관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장갑 착용 후 관찰함
 - 조리실이 협소한 경우, 2인 이상 함께 있지 않도록 거리 유지에 유의하여 관찰함
- 영유아, 보육교직원과는 1~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도록 하며, 어린이집에 비치된 물품 등은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함. 특히, 면담 시 전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유의함

- 모니터링 과정 중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이 유증상자일 경우,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 교사가 유증상자일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증상이 3~4일 이상 지속되면 검사 등 실시토록 하고,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하원 후 증상에 따라 진료 검사 등 안내함

- 모니터링단원은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시·군·구(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함

CHAPTER

III

부모모니터링 지표



1.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구성
2. 부모모니터링 지표 세부기준
 - 영역 1. 건강관리
 - 영역 2. 안전관리
 - 영역 3. 급식관리
 - 영역 4. 위생관리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Ⅲ 부모모니터링 지표

1.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구성

□ 부모모니터링 지표 : 4영역 15지표

-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영유아를 위한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의 4개 영역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1. 건강관리(3)	2. 안전관리(4)	3. 급식관리(4)	4. 위생관리(4)
1. 감염병 예방·관리 2. 비상약품 관리 3. 투약의뢰절차	1. 실내외 시설 관리 2. 등·하원 인계과정 3. 차량 안전관리 4. 아동권리존중 실천 및 안내	1. 식단 및 영양관리 2. 식품 알레르기 관리 3. 조리과정 위생 및 조리직원 복장 위생 4. 식자재 보관규정	1.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2. 급·배식과정 및 식수(우유) 등 위생 관리 3. 실내 공간(놀잇감) 청결 및 공기질 등 관리 4. 개별침구, 칫솔 등 청결 관리

□ 2020년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선 내용

-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강, 안전, 급식, 위생 관련 핵심지표 중심으로 개선
 - 유사·중복지표 통합·감축(20→15개 지표, △25%)

〈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선 〉

2019년		2020년 개정		
영역	지표 수	영역	지표 수	(변동)
건강관리	4	건강관리	3	(△1)
안전관리	6	안전관리	4	(△2)
급식관리	5	급식관리	4	(△1)
위생관리	5	위생관리	4	(△1)
4개 영역	20개 지표	4개 영역	15개 지표	(△5)

□ 부모모니터링 지표 세부내용

영역	내 용
영역1 건강 관리 (3)	1-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① 보육교직원이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②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준수한다.
	1-2.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1-3.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
영역2 안전 관리 (4)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① 실내외 시설·설비, 놀이시설, 놀잇감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②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
	2-2.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2-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보호한다. 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안전설비(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영아용 보호장구, 비상약품 등)가 구비되어 관리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숙지한다. ②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2-4.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②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역	내 용
영역3 급식 관리 (4)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 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 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① 조리(조리과정, 조리직원 위생복장)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 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영역4 위생 관리 (4)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이 청결하게 관리된다.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4-2. 급·배식 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젖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①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식수, 우유(모유)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컵, 젖병, 젖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실내 공기 질 및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된다.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②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
	4-4.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2. 부모모니터링 지표 세부기준

영역 1 건강관리

영유아기는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 질병 등에 취약하므로 보건 위생 측면에서의 청결과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영유아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이를 사려 깊게 파악하여 심신을 돌보아주고 투약 등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응급 상황 시 사용 가능하도록 비상약품의 유효기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영역	지표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확인자료
1. 건강관리 (3)	1-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	○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자체점검표
	1-2.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 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		-
	1-3.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	○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 관련 기록

1-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① 보육교직원이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 ②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③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준수한다.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정기준(①~③)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마련하여 숙지하고 실천해야 하며, 이에 대해 보호자에게도 안내하여야 함. 또한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0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 에 따른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신고 필요 감염병)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 감염병

2020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며,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

* 가정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
(이용문의 : 1577-2514 또는 <http://idolbom.go.kr>)

1-1-① 보육교직원이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함 [관찰, 면담]

- 어린이집 운영 시 감염병 관리수칙 준수 여부
- 감염병 관리수칙 숙지 여부(원장, 보육교사 1인 면담)
 - 영유아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부모가 감염병에 걸린 영유아를 등원시킬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원장이나 교사 자신이 감염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1-1-②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함 [면담]

- 감염병 예방·관리 내용의 부모 안내 여부 확인(원장, 보육교사 1인 면담)
 - 감염병 예방·관리 내용을 부모에게 정기적(분기별)으로 안내하는가?
 - 부모에게 어떤 내용(감염병의 증상 및 예방방법,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는가?
 - 부모에게 어떤 방법(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자료, 게시판 등)으로 안내하는가?

1-1-③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준수함 [기록, 관찰, 면담]

-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자체점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한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4.9.) 첨부서식 활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여부 확인(관찰, 원장 및 보육교사 1인 면담)
 -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 감염 예방 관련 안내문을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함
 - 손 세척제, 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함
 - 소독제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하여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함
 - 감염 예방을 위해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영아반 놀잇감 등 교재교구, 탁자, 손잡이 등)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면담)

- 특별활동 시 접촉 최소화 등 불필요한 접촉 자제
-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식사 시 어린이집 여건상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하며 가능한 한 일렬 식사를 권장함
-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영유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함
- 등원 시 원장은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영유아에 대해 건강상태 사전 체크 후 개인위생 준수하여 출입토록 관리함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는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함)
 - 재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가? (면담)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등원 시) 발열검사 과정에서 37.5℃이상의 발열을 확인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 인계, 귀가 조치
 - (등원 후) 유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
 - 재원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등원 시, 등원 후) 건강 체크 시 증상을 확인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면담)

컨설팅 TIP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칙(필수기자재사항 포함)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함을 안내
 - 필수기자재사항: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증상,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영유아 및 교직원이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의 대처방법
 -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칙 외에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증상,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안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감염병 관리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방역조치 사항 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020.2.)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법령>지침)를 통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 감염성(전염성) 질환

- 매일 등·하원 시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 다음의 증상을 유의하여 본다(평소와 다른 행동, 기침, 발열, 식욕저하, 충혈, 설사, 잠만 자려고 함, 발진, 구토).
-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감염된 영유아의 경우(지속적인 심한 고열, 붉은 반점, 수포성 발진, 기침, 구토, 콧물 섞인 설사, 결막염) 즉시 격리하고 부모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제공한다.

☐ 격리가 필요한 경우의 조치사항

영유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서 부모를 기다려야 합니다.

- 가능한 아픈 영유아와 건강한 영유아를 격리하여 보호한다.
- 전담 보육교직원을 두어 아픈 영유아를 돌본다.
- 아픈 영유아가 가지고 놀 장난감은 구별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소독한다.
-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사항

어린이집에 있어도 될 정도의 상태라면 다음의 사항을 지키도록 합니다.

- 영유아가 자주 손을 씻게 도와준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자주 손을 씻는다.
- 아픈 영유아와 함께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놀이시설 및 장난감을 자주 소독한다.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성(전염성) 질환의 증상

종류	증상
수족구	•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으로 시작,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 후 구강 통증성 피부병변이 혀, 잇몸, 뺨의 안쪽에서 발생,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물집, 궤양으로 발전하며, 가려움이 없는 피부발진이 손바닥, 발바닥에서 나타남 • 잠복기 수일~수주
독감	• 38℃ 이상의 전신 증상(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 • 잠복기 수일~수주
수두	• 발진 발생 1~2일 전부터 권태감, 미열 동반, 24시간 내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딱지의 순으로 진행 • 발진은 몸통, 두통, 얼굴에 발생하고 매우 가려움 • 잠복기 수일~수주
볼거리 (유행성이하선염)	•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 증상을 보이다가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등에 염증 발생 • 잠복기 수일~수주
홍역	•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병변, 이후 홍반성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으로 퍼짐 • 발진은 3일 이상 지속 • 잠복기 수일~수주
뇌염	• 두통, 발열, 오한, 구토, 의식저하, 혼미, 시력저하, 간질, 발작 등

■ 격리(등원 제한)가 필요한 경우

- 발열과 함께 구역질, 구토 등이 있을 때
- 열과 함께 몸에 발진이 돋았을 때
- 설사(두 번 이상 변을 보았다거나 평소 배변습관에서 변화를 보인 경우)를 하는 경우
- 최근 24시간 내 두 번 이상의 구토가 있었을 경우
- 피부나 눈에 황달이 관찰된 경우
- 영유아가 계속 보채고 달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 경우

■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단순 감기,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중이염, 단지 열만 나는 경우, 제5병(감염홍반), B형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분비물이 없는 충혈, 아구창

■ 격리(등원 제한)가 필요한 기간

종류	증상	잠복기간	격리 기간
홍역	발열, 재채기, 결막염 발진	9~13일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 → 발진 후 약 5일간
수두	발열, 발진, 물집이 생김	10~21일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 발진 후 약 7일간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7~21일	귀밑 부기가 다 빠질 때까지 → 발진 후 약 5일간
풍진	가벼운 감기 같은 증세, 발열, 발진	10~21일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 대개 발진 후 5일간
백일해	열은 없고 밤에 기침이 심함	7~14일	특유의 기침이 없어질 때까지 → 발병 약 3~4주
유행성 감기	발열, 기침 목이 아픔, 뼈마디 아픔	1~3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유행성 결막염	눈이 붓고 흰자위가 충혈, 눈곱 多	7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농가진	얼굴이나 수족에 쌀알 크기부터 대두 크기의 발진, 수포가 생김	2~5일	염증기가 지나 환부치료, 포대를 하고 부터
수족구	38도 정도의 고열, 1~2일간 입속, 손바닥, 발바닥에 수포가 생김	3~6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전염성 설사증	설사의 횟수가 많고 변이 물 같고 열이 나며 감기증상을 동반함	2~4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감염(A형)	식욕부진, 두통, 열, 황달, 관절통	10~15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디프테리아	미열, 인후염, 기침, 쉼 목소리, 두통, 편도선 비대, 화색반점	2~4일	배양검사가 2회 이상 음성이 나올 때 까지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등이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즉시 부모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
- 의사의 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하도록 조치한다.
- 완치 확진소견서와 함께 등원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판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 보육교직원, 재원아동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속 거리 두기 실천 등 교육
 - 재원아동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 및 코로나19 발생장소 여행력이 있는 경우 등원 중단 등 방침을 고지하고 게시판에 안내
 -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등) 준수, 개인물품(예: 물병, 휴대폰 등) 사용, 위생관리,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염병 예방 교육
 - 관련 홍보물*을 어린이집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안내
- *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 기준

- (보육교직원) 보육시간 내 아동 접촉 시, 보호자 포함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 착용
 - * 면마스크, 덴탈마스크 등도 가능하나,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생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아동)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다만, 유아의 경우 노래·윺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
 - *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질병관리본부)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편 참고

■ 환경 위생 관리

-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어린이집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 아동 등원 전, 하원 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 양을 증가시킴
- 어린이집 내 냉방기기 가동 시 ①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 세기 등)에 주의 ②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③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 실시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에어컨 사용 편 참고

■ 어린이집 방역 관리

- (기본)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
 - 소독 시 소독제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소독 편 참고

소독대상 물품	소독 시기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	매일 업무 종료 후
현관·보육실·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수시

-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후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자체 소독 시행 시 소독제 안전사용 수칙〉

-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할 것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소독제 희석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할 것
- 사용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제를 뿌린 후 최소 10분 이후에 깨끗한 물걸레나 마른 걸레로 모든 부분을 깨끗이 닦아낼 것
- 소독제에 사람의 피부나 눈이 과다 노출 시 즉시 흐르는 물에 5분 동안 씻어 낼 것
- 소독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 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소독 후 창문 및 출입문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할 것

■ 접촉의 최소화

-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 아동 및 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 (보육활동) 보육활동 시 개별놀이 중심 원칙, 불가피한 경우 아동간 접촉 최소화 강구
 - (특별활동)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사와 어린이집 구성원간 밀접 접촉 최소화하도록 지도, 악기 등 특별활동 도구 상호 교차 사용 금지
- * 반드시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등을 확인
 - (외부활동)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밀폐도가 낮은 야외에서 진행
- ⇒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진행 시 보호자 동의 필요
- (급·간식) 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 식사 시 어린이집 여건상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 가능한 한 일렬 식사 권장
- (집단 행사·교육 시)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 및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자제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예시: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청기 필터 관리, 보육실습,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등) 코로나 19 발생장소 방문 이력,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기록
-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2) 출입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보육실 출입 및 아동 접촉 최소화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

■ 등원·출근 중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린이집(원장)에 연락하고,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38도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여행력 있는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2주간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동거인 중 상기 내용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
 - 또한, 이 경우 보호자 및 교직원이 구체적 내용을 어린이집에 통보토록하여 어린이집 감염예방 신속 대응
- 위 사항으로 업무배제된 보육교직원은 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 등원 시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에 대해 건강상태 사전 체크 후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하여 출입토록 관리
-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발열검사* 실시(1일 2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발열검사 실시 기준 참고) 및 기록 관리
 - 통학차량 이용 아동은 학생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로 교통 흐름 방해 유발 등을 양해하는 문구를 차량 뒤편에 부착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 (1) (등원 시) 발열검사 과정에서 37.5℃ 이상의 발열을 확인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 인계, 귀가 조치

* 코로나 19와 관련이 없어도 증상이 있으면서 기침, 호흡기, 발열과 관련된 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다른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원 불가, 다만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등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하고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 (2) (등원 후) 유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

■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견 시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게 연락
-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보육교직원과 동석하여 대기하도록 함
 - * 동석하는 보육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공간(1인실 원칙)을 확보하되,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 인근 시설의 유희 공간 활용도 가능
- 보호자에게 연락 시 보호자가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 동행, 아동이 진료 받도록 함 (보호자 지정 병원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 지정병원 이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 유증상자의 이송 이후에는 격리 장소를 소독
-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직원·재원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 의심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은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원중단·자가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등원) 복귀
 - 단, 자가격리 시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안내 조치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판(보건복지부, 2020.5.27.)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자체 점검표

- 확인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어린이집 이름 (서명)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1)				
·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 보건소- 관할 사군·구 및 사·도)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인력 배치 및 관리(5)				
· 건강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대상 감염병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				
· 급·간식 및 활동 시 접촉 최소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가				
·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위생 및 방역 관리(4)				
· 어린이집은 자체 소독 지침에 따라 매일 소독하고 있는가				
· 어린이집은 수시로 환기를 하고 있는가				
· 손세척제와 휴지등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				
·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는가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 출처 :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4.22.)

1-2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응급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약품(의약품 반드시 포함)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이외에 외부활동용 비상약품(소독제, 밴드류 등)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으며, 견학, 산책 등 외부활동 시 실제 가지고 나가는 등 활용해야 함. 또한 어린이집에 구비된 모든 약품에는 사용(유효)기한을 표기하고, 사용(유효)기한 내로 관리해야 함

1-2-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음 [관찰]

- 비상약품의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 구비 여부

•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로 갖추어야 할 내용물

비상약품(외용제)	간이 의료기구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체온계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비상약품의 종류는 예시이며, 이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비상약품의 종류는 어린이집에서 관련 규정과 필요에 따라 구비 가능

1-2-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음 [관찰]

- 어린이집 내 모든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한 준수여부 확인
 - 교사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약품도 유효기간을 관리해야 함. 단, 교사가 개인적으로 소지하여 사용하는 약품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컨설팅 TIP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미리 준비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어린이집 내 비상약품은 반드시 의약품을 포함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안내
- 실외용 비상약품(소독제, 밴드류 등)을 별도로 구비하고, 견학·산책 등 외부활동 시 지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어린이집 내 비상약품 및 개인약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손이 닿는 경우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보관하도록 안내



참고

안전사고 대처법

■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 당황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당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교사가 당황하게 되면 사고를 당한 영유아나 나머지 영유아들이 함께 당황해 하거나 더 불안해 할 수 있음
 - 사고를 파악할 때에는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이나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판단
- 다친 영유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법 실시
-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
 - 부모에게 연락
-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킴
 - 사고보고서 작성

■ 응급처치의 기본원칙

-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 / 구조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양쪽 다 해로운 일임
-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함
-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함
- 이송이 필요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

☑ 응급환자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

•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상태
•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 환자의 수

-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가급적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함. 특히 무의식 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하며, 심각한 손상, 심한 출혈 등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음식물 제공은 수술시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음
- 부상자 운반 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는 행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사고유형	응급처치
찢어짐 (타박상, 찰과상 등)	- 가벼운 상처의 경우 깨끗한 상처는 그대로 두고 밴드를 붙이지만, 더러운 상처인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 -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다음 상처에 밴드를 붙임 - 더러운 상처 중 토양, 분변, 타액에 오염된 상처, 화상, 동상에 의한 상처 등은 파상풍 백신접종 또는 파상풍 능동 면역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병원 방문이 필요 - 상처가 깊은(진피층 까지 침범)한 경우나 상처가 큰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흉터가 심할 수 있어 봉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감염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 - 병원 방문 시에는 아이가 무엇에, 어떻게 다쳤는지,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나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아이의 예방 접종력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
골절 / 탈구	- 다친 부위를無理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된 후 병원에 방문 -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살살 높힌 후 부목이 있다면 부목으로 고정하거나 없다면 나무판, 박스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넣어 받쳐 주어 고정함 -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물림(동물)	-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하며, 개방성 상처인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 - 병원에 방문하여 동물의 종류와 정황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 - 동물의 주인이 있을 경우 동물의 병력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설명하고, 야생 동물인 경우 물린 장소, 시간, 동물의 특징 등 사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
물림(사람)	- 사람의 구강 내에는 입으로 물 때 옮겨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균들이 산재 - 사람에게 물렸을 때 만약 피부에 상처가 없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만약 피부에 상처가 났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 사고 일지에 기록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코) - 반대편 콧구멍을 막고 세차게 코를 풀도록 함 - 면봉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더 깊이 밀어 넣거나 점막 손상으로 코피를 유발할 수 있음 - 풀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코를 풀 수 없는 영아의 경우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확인 ▶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눈) - 눈의 표면에 먼지가 붙어 있을 경우 눈꺼풀을 벌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흘려 씻어 내도록 함 - 영유아가 눈을 비비면 각막이 손상 될 수 있으니 눈을 비비지 않게 함 - 눈을 감게 하고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띠를 만든 후 눈을 가려 눈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

* 출처 :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1-3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
-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

확인방법	기록,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해야 하며,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보관방법(상온, 냉장보관 등)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보관해야 함. 또한 투약한 내용은 기록하여 부모에게 보고해야 함

□ 근거

2020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해열제·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서식Ⅱ-4>에 의한 부모의 투약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유선 등)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 실시

※ 투약 시 약품에 기재된 투약기준(용법, 용량 등)을 준수하여야 함

1-3-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함 [기록, 관찰]

- 투약의뢰 관련 기록(※ 필수기재사항 모두 포함 유무 확인)
 - 필수기재사항 : ❶ 투약하는 약의 종류 ❷ 용량 ❸ 시간(횟수) ❹ 의뢰자명
 - 투약의뢰서 문서양식, 알림장(대화수첩), 문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알림장) 등 사용 가능
-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른 투약 실시 여부, 약의 보관방법(상온, 냉장보관 등) 준수 여부 확인
 - 모니터링 당일 투약하는 영유아가 없어 관찰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주일 간 투약의뢰 기록 확인(투약이 이루어진 1개반 선정)

1-3-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함 [기록]

- 투약보고 관련 기록 유무 확인(※ 필수기재사항 모두 포함 유무 확인)
 - 필수기재사항 : ❶ 투약 여부, ❷ 투약자(확인)

영역 2 안전관리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나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시설 및 설비, 놀잇감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도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역	지표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확인자료
2. 안전관리 (4)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		-
	2-2.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	○	귀가동의서
	2-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보호한다.		○	○	차량안전수칙
	2-4.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	-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 ① 실내외 시설·설비, 놀이시설, 놀잇감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 ②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시설 및 설비는 위험요인 없이 안전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전선, 세면대와 정수기에서 나오는 온수 등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또한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은 영유아의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요인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실내외 놀잇감은 파손되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고 재질이 유해하지 않으며,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특히 보육실과 실내외 공간 내 모든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관리하도록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별표1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 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윗다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1-① 실내외 시설·설비, 놀이시설, 놀잇감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됨 [관찰]

-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등의 위험요소 관리**
 -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음
 - 모든 출입문(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모든 출입문 문턱은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마감되어 있음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창문(2층 이상)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천장, 바닥, 벽면 등에 균열이 없으며, 날카로운 못 등의 돌출 등이 없음
 - 바닥은 장판이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설치되어 있음
 - 계단이나 화장실, 세면장 등의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의 위험요소 관리**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고정식 시설·설비)
 -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선반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함
 - 선풍기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온열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돌출형 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계절에 관계없이 적절한 안전 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 화기시설, 가스밸브 등에는 적절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음
 - 블라인드 줄, 샤워기 줄 등은 안전하게 처리되어 있음
 - 덤웨이터(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유희실이나 실내놀이터의 고정식 놀이기구(예: 고정식 미끄럼틀, 볼풀장 등)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음
 - 세면대의 수도꼭지 등에 파손된 곳이 없고 표면은 거칠지 않고 매끄러움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이동식 시설·설비)

-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의 가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은 파손된 곳이 없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실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 옥외놀이터의 바닥면은 평평하며, 웅덩이, 요철 등이 없음
- 옥외놀이터에 설치된 고정식 놀이기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안전함
-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등은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적재물(목재더미, 파손된 가구 등)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 전선줄 등)

- 모든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이동식 콘센트 포함)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덮개로 덮여져 있음
- 전선줄 등은 영유아가 잡아당기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음
- 선풍기 등을 벽면에 설치한 경우, 전선이 벽면에 늘어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음

●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사용 관리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 설치된 세면대, 정수기에서 뜨거운 온수가 나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도록 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 관리

- 원장실, 교사실 등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성인의 보호 없이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음
-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함
※ 어린이집 구조 상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함

● 실내외 놀잇감 및 놀잇감 보관함(바구니) 관리

- 실내외 공간의 모든 놀잇감 및 활동자료는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으며, 파손된 부분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놀잇감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이 파손되어 날카로운 면이 드러나 있지 않음
-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이동식 놀이기구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한 상태임

2-1-②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됨 [관찰]

-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 관리
 -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외 공간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 손이 닿는 위치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사용하는지 확인
 - 영아(만0~2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가 없도록 관리하는지 확인

■ 위험한 물건의 예

- 칼, 성인용 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칼날이 드러나 있는 테이프커터기 등 작업 시 자르거나 찌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어항수질 개선제, 각종 스프레이, 침핀, 건전지, 놀잇감으로 제시된 화장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립스틱, 매니큐어 등) 등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등
- 비상약품함,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 영아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
 - 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예 : 블록이나 구슬, 솜공 등)
 - 직접 활동자료로 제공되거나, 영아가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콩, 팥, 은행, 도토리 등)
- 전기포트, 밥솥 등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건

* 출처 :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0)

컨설팅 TIP

- 현관문에 개폐장치가 있으나 열려 있는 경우, 항상 잠가 놓도록 안내
- 모든 출입문의 범위는 보육실 뿐 아니라 실내 유익실, 화장실, 현관 중간문 등 영유아가 이용하는 모든 공간이 포함됨을 안내
-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막, 문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일과 전반동안 출입문이 열려 있지 않도록 안내
- 위험성 있는 놀이 및 활동자료 제공 시 영유아에게 사용법 및 용도를 지도하고, 성인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상황을 주시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2-2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 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영유아가 귀가할 때 혼잡한 틈에 안전사고(예 : 미아, 유괴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보호자를 확인하고 영유아를 인계하여야 함. 따라서 영유아의 등·하원 시 반드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인계과정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귀가동의서에 따라 보호자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함. 또한 영유아를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보호자의 전화 또는 서명 확인이 필요함

2-2-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음 [기록]

- 귀가동의서 구비 여부 및 내용 확인(※필수 기재사항 포함 유무 확인)
 - 필수 기재사항 : ① 영유아의 이름 ②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③ 관계 및 연락처 ④ 보호자의 서명

2-2-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짐 [관찰, 면담]

-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 확인
 - 등·하원 시 모든 영유아를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지 확인
 - 등·하원 인계과정이 관찰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계과정에 대한 절차를 면담으로 확인(원장, 보육교사 1인 면담)
 - 영유아가 혼자 등·하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 보호자가 영유아를 혼자 하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등원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는가?
 - 귀가동의서에 명시한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보호자의 전화 또는 서명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2-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보호한다.

- 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안전설비(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영아용 보호장구, 비상약품 등)가 구비되어 관리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숙지한다.
- ②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확인방법	관찰, 면담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통학차량 미운행 시, 2개의 평정기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감안하여 'Y' 평정				

■ 지표설명 ■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유아와 교사는 개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차량 운행 시 책임 있는 성인이 동승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이를 숙지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2-3-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안전설비(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영아용 보호장구, 비상약품 등)가 구비되어 관리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숙지함 [관찰, 면담]

● 모든 통학차량의 차량안전 설비 구비 여부 및 안전수칙 게시확인

(소화기 구비 및 관리)

- 차량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의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사용방법 숙지 여부)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숙지 여부(차량운전자 및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 1인 면담)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매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구비 및 관리)

- 영아용 보호장구와 개별 안전띠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충분함
 -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아용 보호장구와 개별 안전띠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I 그룹)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 ※ 영아용 보호장구에 '검' 또는 'KPS' 마크가 있는 경우, 'KC' 안전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비상약품 구비 및 관리)

- 차량 내부에 비상약품이 구비되어 있고,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되고 있음

(차량안전수칙 부착 및 숙지 여부(등·하원용 차량 내부))

- 등·하원용 차량 내부에 차량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고, 안전수칙에는 운전자 및 동승 교사의 차량운행 관련 준수사항, 영유아 안전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차량안전 수칙 숙지 여부(차량운전자 및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 1인 면담)
 - 차량안전수칙(승차 시, 운행 중, 하차 시)을 숙지하고 있는가?

2-3-②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관찰, 면담]

-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 동승 및 안전 운행 여부 확인
 - 모니터링 당일 관찰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면담으로 확인(원장, 등하원 보육교직원 면담)
 - 차량 운행 시 동승하는 성인은 누구인가?
 -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발견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어떻게 도와주는가?
 - 차량 탑승 영유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영유아의 하차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가?

컨설팅 TIP

- 차량용 소화기의 약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실 맨 뒷 열에 설치되어야 하며 모든 영유아의 하차여부 확인 후 가장 뒷 열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함을 안내
- 36개월 미만 영아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영아용 보호장구 중 영아의 체중범위에 해당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안내
- 영아용 보호장구는 마련되어 있으나,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마크 훼손으로 인증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또는 탑승하는 영아 수보다 보호장구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영아용 보호장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
- 차량 내 비상약품은 어린이집과 별도로 차량 내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방법

* 출처 : 경찰청·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경찰청·국토교통부, 2019. 4.)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란?

-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의 올바른 선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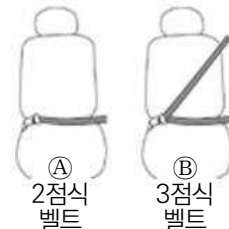
* 출처 :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0)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란?

-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시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차량에 붙어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선택 방법은?

- 1) 먼저 통학차량의 승객석 안전벨트 종류를 확인한다.
(A 2점식 안전벨트 B 3점식 안전벨트)
- 2) 확인된 안전벨트 종류에 맞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선택한다.
A 2점식 벨트 → W2
B 3점식 벨트 → W1, W2
- 3) 안전인증(KC)된 제품인지 확인한다(안전인증서, 인증번호).
- 4) 제품 사용설명을 설치 전 자세히 읽어보고, 안전하게 장착 한다.



■ 안전인증(KC)이란?



안전인증번호 : 00000000



2011년 이전에 실시한
공산품 안전인증 마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사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 검사기준

〈변경 전〉

구 분	체중 범위(kg)
W1	10kg 미만
W2	9kg ~ 18kg 이하
W3	15kg ~ 25kg 이하
W4	22kg 이상

〈변경 후〉

구 분	체중 범위(kg)
0그룹	10kg 미만
0+그룹	13kg 미만
I 그룹	9kg ~ 18kg 이하
II 그룹	15kg ~ 25kg 이하
III 그룹	22kg ~ 36kg 이하

※ '영아용 보호장구'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중 영아의 체중범위에 해당 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 0, 0+, I 그룹)을 선택, 사용하여야 함.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 출처 : 2020 보육사업안내 부록(보건복지부, 2020)

■ 운전자 매뉴얼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 승차 시

- ①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②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 ③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키는지 확인한다.
- ④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한다.
- ⑤ 모두 승차하고 동승보호자가 문을 닫으면 출발을 알린다.
- ⑥ 광각실외후사경 등을 확인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⑦ 다른 어린이가 있는 경우 동승보호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 ⑧ 안전하게 서서히 출발한다.

• 운행 중

-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서행하면서 동승자에게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 확인한다.

• 하차 시

- ① 차를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 ② 기어를 주차(수동일 경우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 ③ 동승보호자에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도록 한다.
- ④ 동승보호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도록 한다.
- ⑤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
- ⑥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한다)
- ⑦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⑧ 차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한다.

■ 동승보호자 매뉴얼

•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승차 시

-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 ②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 시킨다.
- ③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준다.
- ④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 ⑤ 모두 승차하면 문을 닫는다.
- ⑥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 차량 운행 중

-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즉시 매준다.
- ③ 어린이가 차량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하차 시

-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 ② 어린이 안전띠를 풀어준다.
- ③ 오토바이·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고, 먼저 하차한다.
- ④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 한다.
- ⑤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 ⑥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⑦ 차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2-4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②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확인방법	관찰, 면담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여야 함. 또한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12)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도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이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의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권리존중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2-4-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함 [관찰, 면담]

- 보육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
-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장기결석 아동 인지 및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 숙지 여부 확인(보육교직원 2인 면담)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학대피해아동을 보았거나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존중 인지 및 실천 여부 확인(보육교직원 2인 면담)
 - 선생님은 평소에 영유아를 어떻게 부르는가?
 - 영유아와 이야기 할 때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가?(눈높이, 자세, 억양, 목소리 크기 등)
 - 영유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교사에게 이야기 하거나 표현하는 경우 어떻게 반응하는가?
 - 자유놀이나 바깥놀이가 끝났을 때 정리하기 싫어하거나 떼쓰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식사 시간에 특정 음식을 먹기 싫어하거나, 먹는 속도가 느린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지도하는가?
 - 낮잠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참고

■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림 등)
-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

•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go.kr>)

2-4-②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함 [면담]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방법 부모 안내 여부 확인(원장, 보육교사 1인 면담)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방법을 부모에게 안내하는가?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내용을 부모에게 어떤 방법(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자료, 게시판 등)으로 안내하는가?



참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체벌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일까요?
 - 체벌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됨.
 -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 효과는 없음.
-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중한 요청)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음.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함.

예시

- “나를 좀 도와주겠니? 사물함 정리를 깨끗이 하려무나” 와 같이 요청하고, 아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맙구나, OO는 참 잘 도와주는구나” 라고 말함.
 - ▶ 만약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아동이 따르겠다고 해 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환기 시켜줌.
- “OO야, XXX를 하기로 했는데 네가 잊어버린거 같구나, 어서 하렴.”
 - ▶ 아동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중한 요청보다 강력한 의사소통 기법인 ‘나-전달법’을 사용하도록 함.

- (나-전달법) 정중한 요청을 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효과적임.

예시

- “OO야!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주변이 지저분해져 문제란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 **(보상)**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 줌. 아동이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됨.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히라도 보상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무시함. 즉, 부정적인 행동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임.

예시

- 사회적 보상: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리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 주기 등
- 활동적 보상: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놀이 하기 등
- 물질적 보상: 아이스크림, 공, 돈, 책, 오락기, 옷, 학용품, 장난감 등

■ 부모에게 드리는 조언

- 아동중심의 양육(아동학대예방)
-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주세요.
-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주세요.
-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세요.
-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세요.
-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여주세요.
-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낼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주세요.
-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전체 속에서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체벌은 안돼요)
-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나 규칙을 함께 선정하고, 합의하여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 부모 자신의 긍정적·낙천적·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세요.

* 출처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컨설팅 TIP

- 어린이집에 모든 교직원(기타 보육교직원 포함)은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이므로 신고의무와 관련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 및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참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 ▶ (교사 직군)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의료인 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

- **(신고방법)**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24시간 신고접수)

※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

-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
-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 **(평상시 관리·대응)** 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리·대응)** 아동학대 인지 또는 의심 시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 **(무단결석 아동 관리·대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소재 미 파악 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결석당일 (1일)	▶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을 확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원장·원감에게 보고하고, 유선연락 지속 실시
2일	▶ 원장은 수시로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 ▶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가정방문은 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가정 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
사후 관리	▶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담임교사 또는 원장은 평상 시 아동의 상태 등에 대해 안내하고 기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 ▶ 교사는 무단결석한 아동이 재등원하였을 경우, 아동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 ▶ 원장은 해당 보호자에 대해 면담 또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

* 출처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교육부·보건복지부, 2016)

영역 3 급식관리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린 이집에서는 안전하고 다양한 식재료로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수립된 식단을 토대로 영유아의 기호에 맞게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식자재는 보관규정을 준수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과 질병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영역	지표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확인자료
3. 급식관리 (4)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	○		식단표 (급간식 제공기록)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식품 알레르기 조사자료, 반영여부 기록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		-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		-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
-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
- 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확인방법	기록, 관찰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정기준(①~③)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함.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제공하되, 재료를 구입할 수 없거나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식품군 내에서 일부 변경이 가능함. 이때는 운영일지 등에 급·간식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또한 간식은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열량 보충과 영양의 균형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하되,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여(예:생과일, 샐러드, 찐감자, 군고구마 등)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 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1-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함 [기록]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확인
 - 영양사(임용된 영양사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표(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포함)를 사용하고 있음
 - ※ 식단표에 출처가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식단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지 않음
 - 재원하고 있는 영아의 월령,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영아용 식단(이유식)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토요일 운영 시 급·간식 식단표에 토요일 식단이 포함되어 있음
 - 급·간식 제공 기록 확인
 - 사전에 수립된 식단과 실제 제공된 급·간식의 내용이 일치함
 - 급·간식 제공 기록은 운영일지, 보육일지의 급·간식 관리 기록 외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사진 자료를 포함하여 확인 가능함
- ▶ 모니터링 월 기준으로 전 월의 급·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
- 예시** 2020년 5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4월 급·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

3-1-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함 [관찰]

-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 제공 여부
 - 급·간식으로 제공된 음식물은 조각이 크지 않아 쉽게 먹을 수 있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맵고 짜지 않게 조리되어 자극적이지 않아야 함
 - 영유아의 연령, 개별 요구에 맞추어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배식할 음식은 여분이 있어 더 먹기를 원하는 영유아에게는 추가로 배식이 가능해야 함
- 모니터링 당일 영유아가 더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육실 또는 조리실에 추가 배식이 가능한 음식이 남아 있는지 확인

3-1-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됨 [기록]

- 간식을 식단표대로 1일 2회(오전과 오후) 다양하게 제공하는지 확인
 - ※ 한 주에 동일 품명의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함
 - 예시 간식으로 바나나만 일주일에 3회 제공하는 경우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는지 확인
 - 간식 제공 기록에는 제공된 과일 및 채소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제철과일 등으로 명시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과일이나 채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주중 공휴일이 1일인 경우 주 3회 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주중 공휴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주 3회 미만으로 제공되더라도 인정
 - ※ 급식 시 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은 간식에 포함되지 않음
- ▶ 모니터링 월 기준으로 전 달의 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
 - 예시 2020년 5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4월 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한 결과, 4월 1주~4주에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제공되었는지 확인

컨설팅 TIP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고 급·간식 식단표를 반드시 가정에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
- 토요일 운영은 언제나 영유아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토요일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토요일 식단을 수립하여 실제 영유아가 등원한 경우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제공하되, 재료를 구입할 수 없거나 조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식품군 내에서 일부 변경하되 운영일지 등에 급·간식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 당일 생일잔치 등의 행사로 인해 생일잔치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식단표상의 음식은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식품 첨가물(예 : 유화제, 발색제, 보존제 등)이 함유된 인스턴트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과자류는 가능한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
- 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확인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를 위해 영유아별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하고,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급·간식의 조리나 배식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영유아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근거

2020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 (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3-2-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함 [기록]

-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 기록(알림장, 면담자료, 가정통신문 등) 확인

3-2-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함 [기록]

-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급·간식 실시 기록(운영일지, 보육일지, 알림장 등) 확인
 -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급·간식의 조리, 배식이 이루어진 기록(보육일지 등)이 있음

▶ 모니터링 월 기준으로 전 달의 급·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

예시 2020년 5월 모니터링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4월 급·간식 제공 기록을 확인

컨설팅 TIP

-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는 2020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부모동의 및 조사서’를 활용하여 기록 가능함을 안내
-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 기록으로 남겨 둘 수 있도록 안내
- 어린이집 차원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
 - 필수기재사항: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 실질적인 대처방법(대체음식 제공 등)



참고

■ 식품 알레르기 증상 및 유발 식품

- 증상
 - 아토피피부염의 악화 / 피부발진이나 두드러기, 가려움증 / 기침과 천식 /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콧물, 코막힘) / 복부통증, 경련,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위장 증상 / 목구멍의 부종, 기도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 맥박의 상승, 혈압강하를 동반한 쇼크 / 현기증, 머리가 어지럽거나 의식상실 / 입가나 목구멍이 가렵거나 조이는 느낌
- 연령별로 주의해야 할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영아(만0~24개월)	유아(25개월~만5세)
계란, 우유, 땅콩, 대두, 밀	계란, 우유, 땅콩, 대두, 견과류, 밀

■ 식품 알레르기 관리

- 입소 시 부모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 지침에는 식품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 실질적인 대처방법(대체음식 제공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형태까지 제한한다.
- 식품 제한에서 올 수 있는 영양적 문제를 해결한다.
 - 대체 식품을 제시하여 영양을 보충해 준다.

알레르기 식품	대체 식품
계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로 대체
우유 100ml	두부, 마른 멸치
밀, 밀가루	쌀밥, 쌀가루, 잡곡 가루, 전분
생선	말린 표고버섯, 목이버섯
육류	달걀, 두부, 미역, 김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 ① 조리(조리과정, 조리직원 위생복장)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 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조리원, 조리업무를 하는 원장 등)은 위생모, 위생복(전용 앞치마와 전용 머릿수건 등 사용가능), 위생화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아야 함. 또한 머리카락은 위생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위생모와 위생복을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

또한 당일에 조리하여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배식 후 남은 음식은 폐기 처리하는 등 당일 내 모두 소비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조리 직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

3-3-① 조리(조리과정, 조리직원 위생복장)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관찰]

- 조리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함
 - 식재료 준비 작업은 바닥에서 하지 않고, 준비대나 조리대에서 이루어짐
 - 모든 식재료의 세척과 절단 등 전처리 작업이 청결하게 이루어짐

- 조리 중이거나 조리된 식품은 맨손으로 만지거나 취급하지 않음
- 조리 중 맛보기 할 경우 맛보기 숟가락을 별도로 사용함
-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조리원, 조리업무를 하는 원장 등)의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 착용 여부 확인
 - 전용 앞치마(또는 위생복), 전용 머릿수건(또는 위생모), 조리실 전용 신발(또는 위생화)이나 덧신을 착용함
 -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은 조리실 내에서만 사용함
 - ※ 단, 실내 공간과 조리공간의 바닥이 구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신구 착용 여부 확인
 - 조리직원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3-3-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함 [관찰]

-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 전량 폐기 여부 확인
 - 당일 조리된 음식을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1회 조리된 음식을 배식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하는지 확인
 - 당일 배식 후 남은 음식을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냉장고 등)하는지 확인(전일 식단으로 확인)
 - 영유아에게 배식된 음식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사가 끝나면 폐기하여야 하며, 배식 후 남은 음식(잔식)은 다시 배식하지 않고 전량 폐기함

컨설팅 TIP

- 조리하는 교직원의 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 조리업무를 하는 원장이 조리실에서 반드시 위생모와 위생복을 마련하여 조리실 이용 시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위생복을 착용한 채 조리실 이외의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위생복은 자주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 떡, 빵 등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의 경우 일부를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되 즉석 가공 식품을 구매할 경우라면 당일 소모할 수 있도록 안내
- 김치류 및 장류 등 저장음식의 경우에는 당일 소모 원칙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참고

■ 조리 시 유의사항

-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앞치마, 머릿수건,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한다.
- 조리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실시하며 용기, 도구 등을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 식재료 준비 작업은 바닥에서 하지 않으며, 작업 시 맨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생장갑을 사용 한다.
- 조리하는 사람은 귀걸이, 반지, 시계, 팔찌 등을 착용하거나, 매니큐어 등을 바르고 조리할 수 없으며, 조리 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의 상처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통하여 제1군 전염병, 결핵(비활동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및 기타 화농성 질환인 경우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매일 조리 전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발열, 설사, 복통, 구토하는 경우 식중독이 우려되므로 조리작업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본인 및 가족 중에 법정 전염병(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 보균자가 있거나 발병한 경우에는 완쾌될 때까지 조리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 손, 얼굴에 화농성 상처나 종기가 있는 경우 조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 식품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하여 음식의 내부 중심 온도가 74℃ 이상이 되도록 조리한다.
- 양념은 가급적 처음 조리 시 첨가해주고 양념을 첨가한 후에는 충분히 가열하며, 음식을 자주 저어서 음식의 온도를 균일하게 한다.

(예) 양파망을 사용하여 양념육수를 우려내면 양파망의 유해성분도 우려나게 되므로 양파망을 조리과정에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
- 조리된 음식의 맛을 볼 때에는 별도의 맛보기 스푼을 사용해야 한다.
-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시설이 없는 경우는 분산조리를 권장한다.

■ 개인위생을 위한 준수사항

- 조리실 내에서는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해야 하며, 머리카락이 위생모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위생복장을 착용한 채로 작업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위생복을 착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식품 취급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며 용도별(청소용, 조리용, 배식용, 전처리용)로 장갑 및 앞치마의 색을 구분하여 세척 및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하고 인조손톱 착용이나 매니큐어 칠을 하지 않으며, 로션은 세균의 번식을 도우므로 손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 조리사가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경우

- 작업 시작 전
-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후
- 식품 검수, 육류, 어류, 난각 등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과 접촉한 후
- 쓰레기나 청소도구를 취급한 후
- 귀, 입, 코, 머리 등 신체 일부를 만졌을 때
- 음식 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 음식을 먹은 다음 또는 차를 마시고 난 후
-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한 후

* 출처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조리 시 올바른 복장 착용법



* 출처 : 어린이집, 유치원 식중독 예방 관리 매뉴얼 시설운영자용(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 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
- 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정기준(①~③)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 급·간식 제공을 위해 구입한 식자재는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고 식품에 표시된 보관규정에 따라 냉동·냉장·실온보관 하며,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함. 다만, 배추 등 1차 농산물은 구입(입고)일자를 표시하여 관리함.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함

식자재 보관 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함

□ 근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20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

❑ 어린이집 내 모든 식자재 확인대상에 포함

- ※ 유치원, 공공기관, 사회복지관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이때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등)가 확인대상에 포함되며, 조리실 공간 및 설비의 청결 여부도 함께 확인함
- ※ 가정어린이집에서 살림을 병행하는 경우, 인가 공간 내 모든 식자재(살림용 개인 식자재 포함) 확인대상에 포함

3-4-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함 [관찰]

- 식자재 보관규정(냉동, 냉장, 실온 등) 준수 여부
 - 구입한 식자재는 육안 검사 후 밀봉하여 보관 방법에 맞게 실온·냉장·냉동보관함
 - 실온(1~35℃) 보관제품의 경우 냉장보관(0~10℃)의 온도범위를 포함하므로 냉고에 보관하여도 보관방법 위반이 되지 않으나 냉동실에 보관하면 평정에 반영
 - 하절기에는 창고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가급적 냉장실에 보관할 것을 권장
-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
 - 식자재 보관 장소가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건냉하며 청결함

3-4-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함 [관찰]

- 식자재별 구입(입고)일자 기입 여부
 -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식자재는 입고일자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유통기한이 표시된 식자재를 소분하여 별도의 통에 담아서 사용할 경우 입고일을 기재하여 관리함
 -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1차 농산물(배추 등)에 대해서는 입고일을 표기하여 관리함
- ※ 구입(입고)일자 표시 여부 등만 확인하며, 영수증 등 회계장부는 확인하지 않음

3-4-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함 [관철]

- 유통기한 준수 여부 확인
 - 유통기한 준수 여부 확인 시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식품에 한함), 커피는 확인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된장, 고추장, 김치 등)은 유통기한 확인 대상에서 제외 하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해야 함

컨설팅 TIP

- 입고한 재료의 선입, 선출을 지키고 식품 표시사항에 맞게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안내
- 바람직한 식자재 보관방법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 식품과 소모품을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조리실, 보육실, 교사실, 원장실 등 어린이집 내 모든 음식물의 유통기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 가정에서 별도로 가져온 영유아 간식 등의 음식물이 유통기한이 명시된 경우 등원 시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 식자재에 따른 보관법

대상 식품	보관법
육류	• 장기간 저장할 때는 냉동보관
두부	• 찬물에 담근 후 냉장보관
생선	• 내장을 제거하고 흐르는 수돗물(비브리오 예방)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후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게 하여 냉장보관
패류	• 내용물을 모아서 흐르는 수돗물(비브리오 예방)로 깨끗이 씻은 후 냉동·냉장 보관
달걀	• 씻지 않은 상태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살모넬라 예방) •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함
우유	• 4℃ 이하로 냉장보관 • 개봉일시를 기록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
채소	• 물기를 제거한 후 포장지로 싸서 냉장보관 • 씻지 않은 채소와 씻은 채소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
절감	•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뚜껑을 잘 닫아 보관
양념류	• 물,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
통조림	• 개봉 후 강통 채로 보관하지 말고 별도의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 • 개봉일시를 기록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

■ 냉장·냉동실 보관

- 냉장고의 냉장온도는 5℃이하, 냉동온도는 -18℃이하로 관리하고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냉장고 전체 용량에서 70%이하로 물품을 보관한다.
- 뜨거운 것은 식힌 후 보관한다.
- 음식물은 뚜껑 또는 투명비닐로 씌어 밀봉하여 보관한다.
- 냄새가 나는 식품(생선 등)은 냄새를 흡수시키는 식품(우유, 달걀 등)과 분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익히지 않은 날 음식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 달걀은 껍데기에 날짜가 찍힌 것으로 유통기한 내의 것을 구입한다(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2019.08.23.부터 시행)

보관 기준	해당 온도기준(℃)	보관방법
냉장	0~5℃	냉장고 보관
냉동	-18℃	냉동고 보관
상온	15~25℃	상온창고
실온	1~35℃	냉장고 또는 상온창고
건냉소/서늘한 곳	0~15℃	냉장고 또는 상온창고
습기/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 통풍이 잘되는 곳	0~15℃	냉장고 또는 상온창고

■ 상온 보관

- 식재료와 소모품(세제류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식재료는 바닥에 방치하지 않고, 바닥에서 15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보관한다.
- 대용량 제품의 경우 개봉하여 일부 사용한 식재료(캔, 소스 등)는 소독된 용기에 옮겨 담고, 제품의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제품명,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영역 4 위생관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조리직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위생적인 절차로 배식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조리실과 조리도구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과 영유아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비품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역	지표	확인방법			
		기록	관찰	면담	확인자료
4. 위생관리 (4)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이 청결하게 관리된다.		○	○	-
	4-2. 급·배식 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젓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		-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실내 공기 질 및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된다.		○		-
	4-4.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이 청결하게 관리된다.

-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확인방법	관찰, 면담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조리실 내부에는 거미줄이나 먼지 등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후드나 환풍기,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또한 조리도구의 청결을 위해 식기, 도마, 칼, 행주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별표1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1-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됨 [관찰]

- 조리실의 청결·위생 관리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의 청결·위생 상태)

- 조리실 내부는 거미줄이나 먼지 등이 없고, 청결함
- 조리실 바닥은 깨끗하고, 조리과 청소가 끝난 뒤에는 건조하게 유지됨
- 조리실 바닥 하수구에서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함
- 조리실 벽과 천장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고, 청결함
- 조리실을 자주 환기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

(조리실 설비 및 주방가전의 청결·위생 상태)

- 조리실 내 개수대와 조리대는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개수대의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함
- 식기수납장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어 청결함
- 쓰레기통(음식물 등)과 그 주변이 청결함
- 조리실의 가스레인지와 주변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오븐,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믹서기 등의 가전 제품은 표면과 내부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하며, 심한 냄새가 나지 않음

(후드·환풍기, 방충망의 설치 및 작동, 청결·위생 상태)

- 조리실의 후드는 벽의 환기구에 이음새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외관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환풍기는 제대로 작동하고 외관 및 주변이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창문 및 외부로 직접 연결된 모든 문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으며 파손 없이 청결함

4-1-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됨 [관찰, 면담]

- 조리도구의 청결·위생 상태
 - 식기, 도마, 칼, 행주 등 조리실 비품은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 식기는 충분히 건조하여 보관함
- 식재료별로 칼과 도마의 구분사용 확인(조리원 면담)
 - 칼과 도마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 도마와 칼은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컨설팅 TIP

- 조리실 내부 및 조리실 비품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 가스레인지 벽면에 기름때나 얼룩, 싱크대 하단 수납장 안, 환풍기에 거미줄이나 얼룩 등 조리실에 있는 시설 설비의 외관뿐 아니라 안쪽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안내
- 후드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 소독방법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 식약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칼, 도마를 육류, 어류, 채소류, 가공품, 완제품 총 5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안내
- 도마와 칼을 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유의하도록 안내

참고

■ 소독의 종류 및 방법

종류	대상	소독방법
열탕소독	행주, 식기 등	100℃에서 5분 이상 충분히 삶는다.
건열소독	스텐종류의 식기	열소독고를 이용하여 75℃이상의 온도로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한다.
자외선소독	칼, 도마, 기타식기류	바로 소독이 필요한 표면에 자외선이 닿도록 하여 30~60분 동안 소독한다.
화학소독	채소, 과일, 작업대, 조리기기, 칼, 도마 등	화학소독제를 사용해 소독대상에 따라 적합한 종류와 농도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 출처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4-2

급·배식 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젖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 ①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식수, 우유(모유)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컵, 젖병, 젓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급·배식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사는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고,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도구(집게, 가위 등)를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해야 하며, 하나의 음식을 공동접시를 사용하여 여러 명이 놓고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수기를 이용할 경우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함. 또한 영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 이유식 등은 반드시 냉장보관하며, 먹다 남은 모유나 우유는 즉시 폐기함. 영유아가 사용하는 컵, 젖병, 젓꼭지 등도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4-2-①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관찰]

- 급·배식 전용도구의 위생상태
 - 집게, 국자 등 급·배식 전용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함
- 급·배식과정의 위생 상태
 - 교사는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음
 -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도구(집게, 가위 등)를 사용함
 -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함

4-2-② 식수, 우유(모유)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컵, 젖병, 젓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함 [관찰]

- 식수(정수기)의 위생상태
 - 식수는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며, 정수기를 이용할 경우 정수기 꼭지와 필터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우유(모유), 분유 등의 관리상태
 - 영아를 위한 모유와 우유는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먹다 남은 우유나 모유는 즉시 폐기함
 - 영아를 위한 분유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함
- 컵, 젖병, 젓꼭지 등의 관리상태
 - 컵은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영유아 개별 컵 사용 시에는 보육교사가 수시로 청결 상태 확인하여 관리하며, 젖병과 젓꼭지는 1회 사용한 후 소독하여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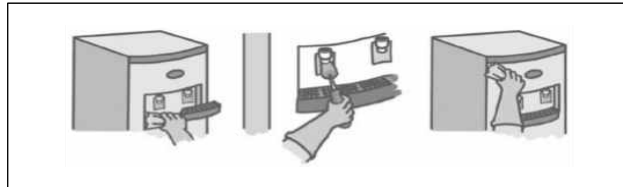
컨설팅 TIP

- 맨손으로 음식 배식, 하나의 배식도구(집게 등)로 여러 가지 음식 배식, 하나의 가위로 여러 가지 음식을 자르거나 사용하던 젓가락이나 포크 등으로 음식 배식하지 않도록 안내
- 급·간식 시, 공동접시를 사용하여 하나의 음식을 여러 명이 놓고 함께 먹는 경우 개별 접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
- 영유아가 사용하던 손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씻어주거나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안내
- 영유아가 손쉽게 마실 수 있게 물과 물컵을 보육실 또는 층별로 비치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 정수기 관리

- 전용솔을 이용하여 식수 꼭지 소독
- 정수기 업체에 정기적인 필터 교체 및 내부 청소 의뢰
- 정수기 주출구, 주변바닥, 용수병 등에 얼룩이나 이물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



* 출처 :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 식수, 우유 관리

- 마실 물은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제공한다.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검사주기는 시·도 조례로 결정),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한다.
- 우유 등과 같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식품은 장시간 상온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영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를 꼭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유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먹다 남은 우유나 모유는 다시 먹이지 않고 바로 버린다.
- 우유는 겨울철에도 반드시 냉장보관 하도록 하여 실온에 방치하지 않는다. 영유아가 찬우유를 먹어 설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냉장 보관 후 제공직전에 중탕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실온에 방치했다가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영유아가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보육실 또는 층별로 마실 물과 물 컵을 비치한다.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실내 공기 질 및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된다.

-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②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은 매일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모든 실내 공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과 대청소를 실시하고, 현관, 복도, 통로, 계단과 창문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모든 보육실의 바닥, 창문, 교구장, 사물함 뒤편 등의 청결상태를 잘 유지하여야 함. 보육실의 놀잇감은 자주 세척,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영아들이 자주 물고 빠는 놀잇감의 경우 더욱 자주 세척하여 관리해야 함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 내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등원 전, 놀이 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낮잠시간 후 등 일과 중 수시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또한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실 및 실내공간은 계절이나 날씨를 고려하여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2020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 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목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4-3-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됨 [관찰]

- 모든 실내 공간의 청결 상태
 - 보육실 및 실내 공간(현관,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 등)의 청결 상태 확인
 - 바닥과 벽, 천장, 기둥, 출입문과 창문 등이 청결함
 - 가구, 활동자료장, 책상과 의자, 사물함 및 뒤편 구석진 곳 등에 먼지뭉치 등 없이 청결함
 - 바닥에 깔려있는 공동매트, 쿠션 등이 찌든 때 없이 청결함
 - 에어컨, 선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이 청결함
 - 청소 사용되는 청소도구와 보관함, 휴지통 등이 청결함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서 해충(바퀴벌레 등)이 발견되지 않음
-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상태
 - 화장실과 세면장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이 건조하게 유지됨
 - 변기 사용 후 매번 신속하게 오물(대·소변)을 처리하며, 변기가 청결하게 유지됨
 - 휴지통과 그 주변이 청결함
 -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이 젖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교체하여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기저귀는 반드시 지정된 공간(기저귀 갈이대, 화장실)에서 갈아주고 기저귀 가는 공간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됨
- 보육실 놀잇감(바구니 포함)의 청결 상태
 - 놀잇감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찌든 때가 묻어있지 않고 청결함
 -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아용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여 매일 세척함
 - 놀잇감을 넣어두는 보관함이나 바구니가 청결함

4-3-②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됨 [관찰]

- 보육실 수시 환기 여부
 - 영유아의 등원 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놀이 후, 낮잠시간 후 등 일과 중 수시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여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함
 -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없는 경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실내 온도의 적정 수준 유지 여부
 - 필요 시 창문 개폐, 냉방기 또는 난방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
 - 보육실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지 확인

컨설팅 TIP

- 영아의 기저귀 갈이는 반드시 지정된 공간에서 하고, 기저귀 갈이 전과 후 기저귀 갈이대를 닦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을 안내
- 보육실의 놀잇감은 자주 세척,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특히 영아반의 경우 영아가 놀잇감을 빨거나 놀잇감에 침이 묻을 시 씻어주거나, 별도 보관해서 나중에 세척할 수 있도록 안내
- 공사장이 있거나, 황사·미세먼지 주의 예보 등의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실내공기 환기 방법

■ 환기시 주의사항

- 주변에 큰 도로나 오염 물질 배출 있을 경우에는 자연 환기에 주의하며 보조적으로 공기 정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실외 미세먼지가 높지 않을 때 하루 2, 3회 30분 실시하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 실외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smsService>)를 통해 문자서비스 신청
- 스마트폰에서 우리동네 대기질 앱 다운하여 활용

* 출처 :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 행동지침(환경부, 2019)



참고

어린이집의 놀잇감 관리방법

■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

-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보육실, 유희실, 놀이터 등)에 있는 놀잇감(플라스틱, 블록, 인형, 형견, 소꿉놀이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한다.
- 특히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아용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고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재질에 따른 세척방법

구분	세척방법
원목 및 나무 놀잇감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서 건조
형견 놀잇감	수시로 먼지 털고 자주 세탁
플라스틱 놀잇감	따뜻한 비눗물에 담가 세척한 후 말림
고무 놀잇감	영유아용 세제 등을 이용하여 스펀지로 닦고 말림
블록 놀잇감	블록 표면의 먼지나 얼룩은 물수건으로 닦고 틈새는 면봉, 칫솔로 닦음

■ 영아(만0~2세) 놀잇감 세척방법

- 영아(만0~2세)반에서 입에 넣고 빠는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여 매일 세척한다.

기저귀 같이 공간의 청결 관리방법

■ 기저귀 같이 공간의 청결

- 기저귀 가는 공간에 기저귀, 옷가지, 물휴지 등 비품을 갖추도록 한다.
- 영아들이 이동식 기저귀 갈이대를 밟고 다니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 기저귀 갈이대를 닦지 않고 소독액만 뿌려 사용하지 않는다.
- 기저귀를 갈 때마다 기저귀 갈이대를 닦고 소독한다.
 - 기저귀 갈이대 위에 종이타올 등 별도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저귀를 갈 때 마다 깔개를 교체한다.
- 사용한 기저귀나 물휴지 등은 즉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서 보육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한다.
- 기저귀 가는 영아반 보육실 휴지통은 뚜껑이 반드시 덮여 있어야 한다.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참고

어린이집의 공간별 실내공기 관리방법

■ 보육실

- 환경마크 제품 사용
- 새로 구입한 교구나 매트, 장난감 등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며, 활동 후 환기하도록 함
-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하며 활동 후 손 씻기
- 공간별, 계절별 온도 차가 급격히 나지 않도록 관리
- 겨울철 18~21℃, 여름철 24~27℃, 습도 40~60% 유지
- 식사 및 간식 후 반드시 환기를 하며 주변 청결히 청소

■ 보육실(가정어린이집)

- 이불, 베개, 매트리스, 카펫, 커튼 등은 주 1회 이상 햇볕에 약 2시간 말림
- 침구류는 1주일에 1회 이상 70℃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
- 청소 시에는 진공청소기 사용 후 물걸레를 사용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함
- 진드기제거제 같은 화학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기저귀 등 처리시 비닐봉투에 밀봉하여 즉시 폐기처리
- 온도 20~25℃, 습도 40~60%로 관리
- 하루 최소 2회, 30분씩 자연 환기(고농도 미세먼지 시 환기시간 1~3분)
- 채광과 조명을 적절히 관리

■ 화장실

- 사용 후 물청소를 반드시 하며, 화장실 바닥의 물기가 없도록 마른수건으로 바닥과 벽을 닦아주고 통풍시킴
- 곰팡이나 세균제거제 등의 화학제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물청소와 환기를 하도록 함

■ 출입문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를 설치하고 외부활동 후에는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옷과 신발을 털도록 함
- 실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고, 손을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함

* 출처 :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 행동지침(환경부, 2019)

4-4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확인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정기준 (①~②)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지표설명 ■

영유아별로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를 사용하며,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 일광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칫솔과 양치컵은 사용 후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칫솔 관리 시에는 영유아의 개별 칫솔이 서로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소독기 사용 시에는 소독기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020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침구,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4-4-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됨 [관찰]

- 개별 침구 구비 및 청결 상태
 - 낮잠을 자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는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를 구비해야 함
 - 동일한 모양과 색깔인 경우에는 개별 구분의 표시가 있음
 - 놀이매트 등을 별도의 깔개 없이 침구로 사용하지 않음
 - 모든 개별 침구와 여분의 침구, 침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청결함

4-4-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됨 [관찰]

- 개별 칫솔, 양치컵 구비 및 청결 상태
 - 칫솔과 양치컵은 개별 영유아별로 사용하며, 칫솔과 양치컵 사용 후에는 깨끗이 헹구고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건조시켜 매번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칫솔과 양치컵을 보관하는 곳(바구니, 쟁반, 소독기 등)도 청결상태 확인
- ※ 영유아가 양치한 이후 바로 칫솔과 양치컵 상태를 관찰하게 될 경우 보육교사가 위생 상태를 관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청결상태 확인

참고

어린이집의 침구 관리방법

- 개별침구(이불, 요, 베개)사용
 - 개별침구는 청결하게 유지한다.
 - 모든 영유아는 개별 침구(이불, 요, 베개)를 사용하고, 놀이매트 등은 침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 침구의 경우 부모님에게 실로 이름을 새기도록 하여 침구의 주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아(만0세)의 경우 바닥이 단단한 요를 사용한다.
- 개별 침구 및 보관장 관리
 -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또는 가정에서 주 1회 이상 세탁한다.
 - 여분의 침구를 구비하고, 사용한 침구는 매회 세탁한다.
 - 침구 보관장에 먼지, 오물이 없어야 한다.
 - 침구와 다른 물건들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칫솔, 양치컵 관리방법

- 칫솔과 양치컵 관리
 - 칫솔과 양치컵은 영유아별로 구비하며, 사용 후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 건조시킨다.
 - 이가 나지 않은 영아에게 사용하는 가재손수건은 삶아서 사용한다.

* 출처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CHAPTER

IV

2020 부모모니터링 서식



1.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IV 2020 부모모니터링 서식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어린이집 배부(부모 공지용), 지자체 제출)

어린이집명			
방문일자	2020년 월 일	시작시간	:
		종료시간	:
방문자	(부모단원) (서명)	어린이집 확인자	(원장) (서명)
	(전문가단원) (서명)		

□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영역	지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 내용
건강 관리	1-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1-2.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1-3.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안전 관리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2-2.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영역	지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 내용
	2-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보호한다.	
	2-4.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급식 관리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위생 관리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이 청결하게 관리된다.	
	4-2. 급·배식 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젓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실내 공기 질 및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된다.	
	4-4.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 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어린이집 배부, 지자체 제출)

□ 어린이집 개요

어린이집명		방문일자	년 월 일
소재지			
설립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등 ☐ 협동 ☐ 민간 ☐ 가정 ☐ 직장		

□ 모니터링 내용

어린이집 의견	※ 모니터링 이후 어린이집 의견을 지자체 제출시 단원 작성(현장 안내 불필요)
----------------	---

○○ 시·군·구 00과

1. 건강관리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		컨설팅 주요 내용 (개선 필요사항, 지표 관련 정보 등)
		Y	N	
1-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① 보육교직원이 감염병 관리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 ②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준수한다.	1-1-① : 관찰, 면담 ☐ 어린이집 운영 시 감염병 관리수칙 준수 여부 ☐ 감염병 관리수칙 숙지 여부 1-1-② : 면담 ☐ 감염병 예방·관리방법 부모 안내 여부 확인 1-1-③ : 기록, 관찰, 면담 ☐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자체점검 실시 및 관리 여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여부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		컨설팅 주요 내용 (개선 필요사항, 지표 관련 정보 등)
		Y	N	
1-2.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 (실내 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1-2-① : 관찰 ☐ 비상약품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 구비 여부 1-2-② : 관찰 ☐ 어린이집 내 모든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간 준수			
1-3.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	1-3-① : 기록, 관찰 ☐ 투약의뢰 관련 기록 구비 여부 ※ 필수 기재사항(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시간(횟수), 의뢰자명) ☐ 투약의뢰 관련 기록에 근거한 투약 실시 여부 1-3-② : 기록 ☐ 투약보고 관련 기록 유무 ※ 필수 기재사항(투약 여부, 투약자(확인))			

2. 안전관리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		컨설팅 주요 내용 (개선 필요사항, 지표 관련 정보 등)
		Y	N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 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① 실내외 시설·설비, 놀이시설, 놀잇감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②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	2-1-① : 관찰 ☐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등 ☐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고정식 시설·설비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이동식 시설·설비 - 실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 전선줄 등 ☐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조절 장치 ☐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대한 영유아 출입 관리 ☐ 실내외 놀잇감 및 놀잇감 보관함(바구니)의 안전 관리 - 실내 놀잇감 파손 - 실외 놀잇감 파손 - 놀잇감 보관함이나 바구니 파손 2-1-② : 관찰 ☐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 관리(칼, 성인용 가위, 샅총제, 세제 등)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		컨설팅 주요 내용 (개선 필요사항, 지표 관련 정보 등)
		Y	N	
2-2.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 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2-2-① : 기록 ☐ 귀가동의서 구비 (전체 _____ 중 _____ 명) ☐ 귀가동의서 필수항목 기재여부 ※ 필수기재사항(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인계받는 보호자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 서명) 2-2-② : 관찰, 면담 ☐ 인계과정 준수 여부			
2-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보호한다. 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안전설비(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영아용 보호장구, 비상약품 등)가 구비되어 관리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숙지한다. ②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2-3-① : 관찰, 면담 ☐ 차량안전수칙 부착 및 숙지 여부 ☐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구비 및 관리 ☐ 소화기 구비 및 관리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사용방법 숙지 여부 ☐ 비상약품 구비 및 관리 2-3-② : 관찰, 면담 ☐ 성인 동승 여부(운전자 제외) ☐ 운전자의 안전운행 여부			
2-4.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②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4-① : 관찰, 면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인지 여부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숙지, 장기결석 아동 및 학대 피해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등) ☐ 아동권리존중 인지 및 실천 여부 * 모니터링 진행 과정 중 체벌 등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군·구에 반드시 당일 통보 2-4-② : 면담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실천 관련 내용 안내 여부			

3. 급식관리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		컨설팅 주요 내용 (개선 필요사항, 지표 관련 정보 등)
		Y	N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 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3-1-① : 기록 ☐ 식단표 영양사 작성 여부 ☐ 식단표와 제공된 급·간식 일치 여부 (전체 _____ 일 중 _____ 일 변동) 3-1-② : 관찰 ☐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 제공 3-1-③ : 기록 ☐ 간식 1일 2회(오전, 오후) 제공 여부 ☐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 제공 주 3회 제공여부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 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3-2-① : 기록 ☐ 영유아별 식품알레르기 질환 조사 기록 (알림장, 면담자료, 가정통신문 등) 3-2-② : 기록 ☐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한 급·간식 실시 기록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① 조리(조리과정, 조리직원 위생복장)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	3-3-① : 관찰 ☐ 조리과정의 청결(조리 전 손 씻기, 맛보기 손가락 별도 사용 등) ☐ 조리직원 위생모(머리카락 밖으로 나오지 않음) ☐ 조리직원 위생복(전용 앞치마 가능) ☐ 조리직원 위생화(전용 신발, 덧신 가능) ☐ 조리직원 장신구 미착용 3-3-② : 관찰 ☐ 당일 급식에 제공된 음식 전량 폐기 여부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식자재 보관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 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3-4-① : 관찰 ☐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한 보관 (부적절한 보관 _____ 건) ☐ 식재료 보관 장소의 청결·위생 상태 3-4-② : 관찰 ☐ 식품구입(입고)일자 기입 (미기입 식품 _____ 건) 3-4-③ : 관찰 ☐ 유통기한 준수 (유통기한 경과 식품 _____ 건)			

4. 위생관리

모니터링 지표	확인 내용 및 방법	확인결과 (✓)		컨설팅 주요 내용 (개선 필요사항, 지표 관련 정보 등)
		Y	N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이 청결하게 관리된다.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4-1-① : 관찰 ☐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의 위생관리 ☐ 조리실 설비 및 주방가전의 위생관리 - 개수대, 조리대, 하수구, 식기수납장, 쓰레기통 -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 후드·환풍기, 방충망의 설치 및 작동, 위생관리 4-1-② : 관찰, 면담 <조리도구 및 비품 관리> ☐ 식기 ☐ 칼 ☐ 도마 ☐ 행주 ☐ 기타 주방도구(냄비, 국자, 후라이팬 등) <칼·도마 용도별 구분 사용> ☐ 칼 ☐ 도마			
4-2. 급·배식 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젓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①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식수, 우유(모유)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컵, 젓병, 젓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	4-2-① : 관찰 ☐ 급·배식 전용도구(집게, 국자 등) 위생상태 ☐ 테이블 위생상태 ☐ 음식별 배식도구 사용 ☐ 개별식기 사용 4-2-② : 관찰 ☐ 식수(정수기) 관리(꼭지 청결, 필터 교환) ☐ 우유(모유)의 냉장보관 ☐ 남은 우유(모유) 폐기 ☐ 컵 관리(청결상태, 사용 전후 구분) ☐ 젓병·젓꼭지 소독·관리(1회 사용 후 소독)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실내 공기 질 및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된다.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②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실내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	4-3-① : 관찰 ☐ 보육실 ☐ 화장실(세면장) ☐ 조리실 ☐ 현관 ☐ 복도(통로) ☐ 계단 ☐ 유학실 ☐ 교사실 ☐ 원장실 ☐ 자료실 ☐ 기타() ☐ 보육실의 놀잇감(바구니 포함) 청결 4-3-② : 관찰 ☐ 보육실(실내 공유 공간 등) 환기 여부 (급간식 후, 낮잠시간 후 등) ☐ 실내 적정 온도 유지			
4-4.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4-4-① : 관찰 ☐ 개별 침구 구비(이불, 요, 베개) ☐ 청결 상태(이불, 요, 베개) 4-4-② : 관찰 ☐ 개별 칫솔, 양치컵 구비 ☐ 칫솔, 양치컵의 청결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CHAPTER

V

부록 - 주요개정사항



1. 2020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 주요 변경사항
2. 2020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정사항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V 부록 - 주요개정사항

1. 2020 부모모니터링 운영체계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2019년)	개선(2020년)
모니 터링 대상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대상 - 우선 선정 기준 -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정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 어린이집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대상 - 우선 선정 기준 1)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2)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대상 제외 기준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2018년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 평가인증 확인점검 대상 명단 통보월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가능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모니 터링 방법	- 부모·전문가 단원(2인 1조)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실시 - 1일 1개소, 3시간(급식시간 포함) 내외 진행	- 부모·전문가 단원(2인 1조)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실시(컨설팅 병행) - 1일 1개소, 3시간(급식시간 포함) 내외 진행

구분	기존(2019년)	개선(2020년)																								
모니 터링 지표	4개 영역 20개 지표 <table><tr><th>영역</th><th>모니터링 지표</th></tr><tr><td>건강관리</td><td>4</td></tr><tr><td>안전관리</td><td>6</td></tr><tr><td>급식관리</td><td>5</td></tr><tr><td>위생관리</td><td>5</td></tr><tr><td>소계</td><td>20</td></tr></table> - 항목 46개	영역	모니터링 지표	건강관리	4	안전관리	6	급식관리	5	위생관리	5	소계	20	4개 영역 15개 지표 <table><tr><th>영역</th><th>모니터링 지표</th></tr><tr><td>건강관리</td><td>3</td></tr><tr><td>안전관리</td><td>4</td></tr><tr><td>급식관리</td><td>4</td></tr><tr><td>위생관리</td><td>4</td></tr><tr><td>소계</td><td>15</td></tr></table> - 항목 33개	영역	모니터링 지표	건강관리	3	안전관리	4	급식관리	4	위생관리	4	소계	15
영역	모니터링 지표																									
건강관리	4																									
안전관리	6																									
급식관리	5																									
위생관리	5																									
소계	20																									
영역	모니터링 지표																									
건강관리	3																									
안전관리	4																									
급식관리	4																									
위생관리	4																									
소계	15																									
모니 터링 등급	- 각 영역별 충족(Y) 지표 개수에 따라 등급 산정(우수, 양호, 개선필요) - 모니터링 등급은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고, 미충족(N)지표 중심으로 개선필요 사항 안내	- 모니터링 등급을 산정하지 않음 - 어린이집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결과 활용	-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에 대해 컨설팅(의무) 및 2차 모니터링 실시 - 운영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	운영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u>재원 영유아의 전체 부모에게 공지</u>																								

2. 2020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정사항

1. 건강관리 : 4개 → 3개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0년)
1-1.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있다.(기록) ② 보육교직원이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관찰, 면담) ③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면담)	1-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삭제〉 ① 보육교직원이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관찰, 면담) ②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면담) ③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준수한다.(기록, 관찰, 면담)
1-2.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다.(기록) ②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를 관리하고 있다.(기록)	〈삭제〉
1-3.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관찰)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관찰)	1-2.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관찰)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관찰)
1-4.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기록, 관찰)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기록)	1-3.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기록, 관찰)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기록)

2. 안전관리 : 6개 → 4개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0년)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관찰) ② 실내외 놀잇감이 파손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관찰) ③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관찰)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① 실내외 시설·설비, 놀이시설, 놀잇감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관찰) 〈2-1-① 항목에 통합〉 ②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관찰)
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관리되고 있다.(관찰) ②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대피도, 업무분장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기록)	〈삭제〉
2-3.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기록) 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관찰, 면담)	2-2.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기록) 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관찰, 면담)
2-4.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①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차량안전설비가 구비되어 있다.(관찰) ②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관찰, 면담) ③ 차량운전자와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은 차량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다.(면담)	2-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보호한다. 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안전설비(소화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영아용 보호장구, 비상약품 등)가 구비되어 관리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숙지한다.(관찰, 면담) ②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관찰, 면담) 〈2-3-① 항목에 통합〉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0년)
2-5.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있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기록) ②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담)	2-4.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삭제〉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관찰, 면담) ②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담)
2-6.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①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가정에 안내하고 있다.(면담)	〈2-4지표에 통합〉

3. 급식관리 : 5개 → 4개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0년)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기록)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관찰) 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기록)	3-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사용하며, 식단표대로 급·간식을 제공한다.(기록) ②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크기, 조리형태)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관찰) ③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가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된다.(기록)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기록) 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기록)	3-2.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한다.(기록) ②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기록)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0년)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①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관찰) 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관찰)	3-3.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① 조리(조리과정, 조리직원 위생복장)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관찰) ②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배식 후 전량 폐기한다.(관찰)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한다.(관찰) 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관찰) 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관찰)	3-4. 식자재 보관규정을 준수한다. ① 식자재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관찰) ② 식자재별로 구입(입고)일자를 기입하여 관리한다.(관찰) ③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도록 관리한다.(관찰)
3-5.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관찰) ②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관찰)	〈3-4지표에 통합〉

4. 위생관리 : 5개 → 4개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0년)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조리 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관찰)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관찰, 면담) ③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관찰)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이 청결하게 관리된다.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관찰)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관찰, 면담) 〈3-3-① 항목에 통합〉

변경 전(2019년)	변경 후(2020년)
4-2. 급·배식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젖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①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관찰) ②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관찰) ③ 컵, 젖병, 젓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관찰)	4-2. 급·배식 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젖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①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관찰) ② 식수, 우유(모유)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컵, 젖병, 젓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관찰) 〈4-2-② 항목에 통합〉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실내 공기 질 및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된다.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4-3-① 항목에 통합〉 ②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관찰)
4-4.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4-4.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4-5. 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환기가 자주 이루어져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된다.(관찰) ②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관찰)	〈4-3-② 항목에 통합〉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 운영매뉴얼」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 보육사업안내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본 자료는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방법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또는 교육을 위한 자료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함께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